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오 종 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세조연간 정희왕후의 정치 활동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박 수 진

# 세조연간 정희왕후의 정치 활동

오 종 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박 수 진


# 인준서

박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 ..... 홍석근 

심사위원 ..... 오준근 

심사위원 ..... 홍호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貞熹王后는 조선왕조에서 최초로 수렴청정을 했던 인물로, 조선전기 정치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세조연간 정희왕후가 왕비로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정희왕후가 왕비로서 참여했던 여러 의례들 또는 세조와 함께하였던 일련의 행위들이 세조의 정치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밝히고, 정희왕후가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행동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세조연간 왕과 왕비를 위해 행해진 중요한 의례로 冊封儀와 上尊號儀, 賀禮와 誕日宴, 會禮宴과 豐呈 같은 연회들을 주목하였다. 정희왕후는 세조가 즉위하여 왕비로 책봉되었고, 세조가 조선의 왕들 가운데 처음으로 재위하는 동안 존호를 받음에 따라 정희왕후 역시 존호를 받았다. 세조연간 하례연과 탄일연, 회례연 및 풍정이 빈번하게 행해졌고, 정희왕후도 왕비로서 연회를 시행하였다. 세조는 정희왕후와 연회에 자주 동행하였다.

『세조실록』을 통해 정희왕후가 당시 정치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파악하였다. 세조연간 정희왕후의 비공식적인 정치참여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였던 경우, 세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희왕후의 발언이 언급되는 경우, 정희왕후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하여 언문으로 세조에게 아뢰는 경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희왕후는 당시 정치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렸고, 세조는 정희왕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그녀가 정치에 대한 상당한 안목을 갖고 있었고, 세조를 도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세조는 자주 정희왕후와 함께 연회에 참여하였고, 신료들을 인견하였다. 또한 講武, 巡幸, 陵幸, 觀稼 등과 같은 공적인 행차에 정희왕후와 동행하였

다. 세조는 행차를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고자 했고, 정희왕후와 동행하여 정희왕후 또한 백성들에게서 존경을 받게 하고자 했다. 세조는 적극적으로 불교를 옹호하였고, 정희왕후도 불교를 믿었다.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여 즉위하였기 때문에 왕위에 정당성이 부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권위가 매우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이에 따라 세조는 불교에서 자신의 초월적인 권위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정희왕후에게도 왕의 배우자로서 초월적인 권위를 부여하고자 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왕과 왕비를 위한 의례 .....	5
1. 冊封儀 .....	5
2. 上尊號儀 .....	7
3. 賀禮와 宴會 .....	9
4. 豊呈 .....	14
III. 왕비의 정치적 판단들 .....	18
IV. 세조의 정치와 정희왕후 .....	28
V. 결론 .....	41

##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 부 표

## I. 서론

조선시대 왕비는 여성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 왕비는 왕의 배우자로서, 內命婦와 外命婦를 다스릴 권한을 갖고 있었다.<sup>1)</sup> 이와 같이 왕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존재였다. 왕비는 정치적인 역학관계의 고려 속에서 중요한 가문 출신의 여성이 간택되었다.

성리학을 국가의 기본 사상으로 삼은 조선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한되어 있었다. 여성이 합법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에 대왕대비나 왕대비가 왕실의 어른으로서 수렴청정하는 것이었다. 貞熹王后는 조선왕조에서 최초로 수렴청정을 했던 인물로, 조선전기 정치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세조연간 정희왕후가 왕비로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희왕후가 왕비였을 때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희왕후는 당연히 『세조실록』에 자주 등장하는데, 다른 왕비들이 실록에 등장하는 것 보다 빈번하다.<sup>2)</sup>

정희왕후는 1418년(세종 즉위년) 11월 11일에 坡平 尹氏 尹璠과 仁川 李氏 사이의 3남 7녀 중 아홉째 딸로 태어났다.<sup>3)</sup> 1428년(세종 10) 10월 13일 11세의 나이에 晉平大君 李瑀와 혼인하여 같은 달 19일 三韓國大夫人에 봉

1) 李英淑, 「朝鮮初期 內命婦에 대하여」, 『역사학보』 96, 역사학회, 1982.

2) 조선왕조실록 DB에서 왕비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였을 때, 결과가 100건 이상이었던 경우는 『세조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 『고종실록』에 불과하다. 세조를 제외한 왕들은 오래 재위하였고, 재위기간동안 왕비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반면 세조는 재위기간이 짧고 왕비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희왕후에 대한 기록이 많다. 『세조실록』에 왕비에 대한 기록이 많은 이유는 세종연간 소헌왕후 심씨의 아버지인 심운의 역모사건과, 오례를 정비하며 왕비의 의례에 대한 논의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종실록』과 『중종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은 왕비 사망과 계비 간택의 문제로 중궁에 대한 기사가 많이 등장한다. 『고종실록』은 왕비의 간택과 존호 및 건강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이다.

3) 지두환, 『세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8.

해졌다.<sup>4)</sup> 정희왕후가 21살이 되던 해인 1438년(세종 20)에 첫 아이 桃源君(懿敬世子)을 낳았고, 1441년(세종 23)에 딸을, 1450년(세종 32) 1월 1일에 私邸에서 海陽大君(예종)을 낳았다. 李瑄의 대군 호칭은 그 사이에 咸平, 晉陽을 거쳐 首陽으로 바뀌었고, 1455년(세조 1)에 단종의 선위를 받아 즉위하여 세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희왕후도 왕비로 책봉되어 1468년(예종 즉위년)까지 14년간 재위하였다.<sup>5)</sup>

1468년(예종 즉위년) 9월 세조가 예종에게 양위하여 정희왕후는 대비가 되었으며, 세조는 양위하고 다음날 사망하였다. 1469년(예종 1) 11월 예종이 재위 16개월 만에<sup>6)</sup> 사망하자 정희왕후는 큰 아들인 의경세자의 둘째아들 者乙山君 李娑로 하여금 후사를 잇게 하였다. 당시 성종은 13살에 불과하였으므로 정희왕후가 수렴청정 하였는데, 성종이 20살이 되는 해까지 7년간 시행하였다. 1476년(성종 7)에 정희왕후는 성종이 장성하고 학문도 성취되어 모든 정사를 재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철렴하였던 것이다. 이때 정희왕후의 나이는 57세였다. 정희왕후는 1483년(성종 14) 요양 차 온양으로 행행하였으나 병세가 심해져, 3월 30일 온양의 행궁에서 6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이제까지 정희왕후에 대한 연구들은 수렴청정 시기와 그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다.<sup>7)</sup> 조선시대 여성과 왕비를 다룬 연구서에서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에

4) 『세종실록』 42권, 10년 10월 13일 신묘; 10년 10월 19일 정유.

5) 『세종실록』 60권, 15년 6월 27일 무신; 61권, 15년 7월 1일 임자; 107권, 27년 2월 11일 을묘; 『세조실록』 1권, 1년 윤6월 11일 을묘; 1년 7월 20일 계사; 『예종실록』 1권, 총서.

6) 예종은 1468년 9월 초에 즉위하여 이듬해 11월 말에 사망하였다. 그 가운데 윤2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종의 재위기간은 16개월이다.

7) 정희왕후의 수렴청정 방식과 성종연간의 정치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우기, 「朝鮮 成宗代 貞熹王后의 垂簾聽政」, 『조선사연구』 10, 조선사연구회, 2001.

최승희, 「成宗朝의 國政運營體制와 王權」, 『조선사연구』 10, 조선사연구회, 2001.

한춘순, 「성종 초기 貞熹王后(세조비)의 政治 聽斷과 勳戚政治」, 『조선시대사학보』 22, 조선시대사학회, 2002.

김범, 「朝鮮 成宗代의 王權과 政局運營」, 『사충』 61,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5.

임혜련, 『19세기 垂簾聽政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고,<sup>8)</sup> 조선의 왕비나 대비에 관한 대중서에서 부분적으로 정희왕후의 생애를 소개하였다.<sup>9)</sup> 그 밖에 정희왕후를 다룬 연구로는 성종연간 정희왕후의 국상 의례에 관한 것과,<sup>10)</sup> 조선전기 왕비 加封胎室에 대한 연구가 있다.<sup>11)</sup> 이와 같이 세조연간 왕비로서의 정희왕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아직 학계에 제출된 것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미약하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희왕후가 왕비로서 어떠한 정치활동을 펼쳤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세조의 집권과 즉위과정, 세조연간의 정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많으나,<sup>12)</sup> 세조의 정치방식과 정희왕후를 연관 지어 설명하였던 논문은 거의 없다. 다만 김태영은 간략하게나마 ‘세조가 훈척지배체제를 성립시키면서 정희왕후를 대동함으로써 國政이 곧 家政이라 인식하고 신료들이 왕비를 國母로 받들게끔 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어 주목된다.<sup>13)</sup>

- 
- 8) 변원립, 『조선의 왕후』, 일지사, 2006; 최흥기 외,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아카넷, 2006;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2.
- 9) 신명호, 『조선왕비실록』, 역사의 아침 2007; 유승환,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비열전』, 글로박스, 2010; 윤정란, 『왕비로 보는 조선왕조』, 이가출판사, 2015; 임중웅, 『조선왕비열전』, 선영사, 2015; 지두환, 『세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8; 김수지, 『대비, 왕 위의 여자』, 인문서원, 2014.
- 10) 홍근혜, 「조선 성종대 貞熹王后 國喪 의례와 그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80, 조선시대사학회, 2017.
- 11) 홍성익, 「조선전기 王妃 加封胎室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117, 한국사학회, 2015.
- 12) 한영우, 「왕권의 확립과 제도의 완성(세조~성종)」,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73.  
정두희, 「조선 세조-성종조의 공신연구」, 『진단학보』 51, 진단학회, 1981; 「世祖·成宗 功臣集團의 政治的 性格」, 『朝鮮初期政治支配勢力研究』, 1983, 일조각.  
김태영, 「朝鮮초기 世祖王權의 專制性에 대한 一考察」, 『한국사연구』 87, 1994.  
한충희, 「왕권의 재확립과 제도의 완성」, 『신편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최승희, 「세조대 왕위의 취약성과 왕권강화책」, 『조선시대사학보』 1, 조선시대사학회, 1997; 「세조대 국정운영체제」, 『조선시대사학보』 5, 조선시대사학회, 1998.  
최배용, 『朝鮮朝 世祖의 國政運營』, 신서원, 2000.  
강제훈, 「朝鮮 世祖代의 朝會와 王權」, 『사총』 61, 역사학연구회, 2005.  
김돈, 「세조대 ‘단종복위운동’과 왕위승계문제」, 『역사교육』 98, 역사교육연구회, 2006.  
오중록, 「世祖의 즉위과정과 정치문화의 변동」, 『인문과학연구』 31,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김경수, 「세조의 집권과 권력 변동」, 『백산학보』 99, 백산학회, 2014.  
김순남, 「조선 세조대 말엽의 정치적 추이」, 『역사와 실학』 60, 2016.

본 논문에서는 정희왕후가 왕비로서 행하였던 여러 의례들 또는 세조와 함께하였던 일련의 행위들이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양상이 세조의 정치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리라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가설 중 하나인 것이다. 나아가 정희왕후가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왕비로서 행동하였으리라고 추정하였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II장에서는 세조연간 왕과 왕비를 위해 행해졌던 의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희왕후가 참여했던 의례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세조실록』 기사를 통해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정희왕후의 판단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파악해보자 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세조의 정치방식이 정희왕후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고, 그로 인해 그녀가 다른 왕비들보다 실록에 많이 기록되어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세조실록』을 중심으로 하여 정희왕후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타 실록들 속에 기록된 다른 왕비들의 모습도 확인하여 정희왕후의 행적이 얼마나 특별하였던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燃藜室記述』 등 다른 자료들도 이용하였다.

---

13) 김태영, 앞 논문, 1994, 139쪽.

## II. 왕과 왕비를 위한 의례

『國朝五禮儀』에 규정되어있는 의례는 대부분 왕을 중심으로 한 의례이며, 일부 왕비를 중심으로 한 의례도 포함되어 있다. 왕비를 위한 또는 왕비를 중심으로 한 의례는 길례의 선잠과 관련된 의식과 가례에서 각종 혼례 관련 의식, 진하나 하례와 관련된 朝賀의식, 진연 관련 의식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세조연간 중요한 의례로 책봉의와 상존호의, 하례와 탄일연, 회례연과 풍정 같은 연회들을 주목하였다.

### 1. 冊封儀

1455년(세조 1) 윤6월 11일에 세조가 단종의 선위를 받아 근정전에서 즉위하였다. 세조는 즉위례를 마치고 法駕를 갖추어 잠저로 돌아갔다. 종친과 문무백관, 耆老, 족친들이 정희왕후에게 하례를 드렸으나 받지 않았다.<sup>14)</sup> 상왕이었던 단종이 아직 경복궁에서 거처를 옮기지 않았으므로 세조는 즉위후에도 약 10일간을 잠저에 머무르며 경복궁을 오가면서 정사를 처리하였다. 비록 세조가 즉위하기는 하였으나 정희왕후는 정식으로 왕비로 책봉된 것도 아니었으며, 정궁인 경복궁이 아닌 잠저에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희왕후가 하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윤6월 20일 단종이 창덕궁으로 이어하면서 세조는 잠저에서부터 경복궁으로 들어갔다.<sup>15)</sup>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때 정희왕후도 경복궁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정희왕후는 세조가 즉위하고 약 한달 뒤인 7월 20일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세조는 근정전에 임어하여 윤씨를 왕비로 책봉하고, 領議政 鄭麟趾와 中

14) 『세조실록』 1권, 1년 윤6월 11일 을묘.

15) 『세조실록』 1권, 1년 윤6월 20일 갑자.

樞院使 朴仲林을 보내어 정희왕후에게 冊과 寶를 수여하였다. 이날 정희왕후는 왕비로서 처음으로 모든 公主와 翁主, 內命婦와 外命婦를 불러 內殿에서 연회를 베풀었다.<sup>16)</sup>

조선에서는 국왕과 같이 왕비도 명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세조는 반정을 통해 즉위하였기 때문에, 유교정치이념으로 볼 때 그의 왕위는 명분과 정통성, 도덕성에 하자가 있었다.<sup>17)</sup> 세조는 왕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라도 명 황제로부터의 즉위에 대한 승인이 필요했다. 1455년(세조 1) 윤6월 13일 세조는 禮曹判書 金何와 刑曹參判 禹孝剛을 奏聞使로 임명하고, 같은 달 29일 이들을 명에 보내어 辭位와 承襲에 대한 운허를 청하였다.<sup>18)</sup> 1456년(세조 2) 4월 20일에 세조는 명 景泰帝로부터 조선국왕에 봉한다는 詔와 勅, 誥命을 받았다. 같은 날 정희왕후 역시 경태제로부터 왕비의 고명과 관복을 받았다.<sup>19)</sup>

이보다 약 한달 앞선 3월 20일에 세조가 승정원에 전교하여 중궁이 친히 고명을 받게 되면 관복은 國制를 따를 것인지 예조와 의정부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sup>20)</sup> 다음날 禮曹正郎 李漢謙이 예조와 의정부의 의논을 가지고 “명나라 사신이 만약 中宮에게 친히 誥命을 주고자 하면 복색은 마땅히 國制를 쓰고, 친히 주고자 하지 않으면 편의로 祗受하게 하라”고 아뢰었다. 이에 세조는 “중궁의 從俗禮儀註를 예조로 하여금 詳定하게 하라”고 전교하였다.<sup>21)</sup>

그로부터 약 한달 뒤인 4월 18일에 問禮官 예조정랑 禹繼蕃이 回啓하기를, “제가 중국 사신에게 ‘중궁의 例는 誥命을 친수하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윤봉 등이 ‘친수하는 것이 古禮이나 마땅히 本國의 禮를 따르겠다’고 하였습

16) 『세조실록』 1권, 1년 7월 20일 기사.

17) 최승희, 앞 논문, 1997.

18) 『세조실록』 1권, 1년 윤6월 13일 정사; 윤6월 29일 계유.

19) 『세조실록』 3권, 2년 4월 20일 기미.

20) 『세조실록』 3권, 2년 3월 20일 기축.

21) 『세조실록』 3권, 2년 3월 21일 경인.

니다. 諸司 職掌이 왕비는 고명을 친히 받지 않는다 하여 제가 논변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시 예조정랑 이계전을 보내 윤봉 등에게 전하게 하고, 또 박원형에게 “윤봉 등이 우계번에게 중궁이 고명을 친수하는 것이 예부터 있는 법이라고 하였으나, 우계번이 의주를 상정하여 보이지 않았으니 매우 불가하다. 이제 이계전에게 주니 諸司 職掌이 가서 보여 주고, 윤봉 등이 禮를 근거하여 상정한 뜻을 알게 하라”고 치서하였다.<sup>22)</sup> 이리하여 정희왕후는 명 사신에게서 관복과 고명을 친수하지 못하였으며, 세조가 왕비를 대신하여 관복과 고명을 받았다.

정희왕후 이전 왕비의 경우를 살펴보면, 1403년(태종 3) 10월 27일에 명 사신 黃儼이 내전에 들어가서 왕비인 원경왕후에게 관복을 전하고 나왔다는 기록이 있다.<sup>23)</sup> 또한 1450년(문종 즉위년) 6월 4일 문종은 자신과 왕비를 책봉하는 명 사신이 출발했다는 보고를 받았고,<sup>24)</sup> 다음날인 5일 의정부 대신들과 사신의 영접 절차에 대해 의논하였다. 문종은 이날 “왕비가 나가서 흠사한 물건을 받는 예가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모두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왕비가 이미薨한 경우이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sup>25)</sup> 태종비 원경왕후가 관복을 친수한 적이 있었듯이, 세조는 왕비가 고명을 친수할 때의 복식을 논의하게 한 것으로 추측되나, 정희왕후는 결국 세조를 통해 고명과 복식을 받게 되었다.

## 2. 上尊號儀

세조와 정희왕후는 조선 건국된 이래 처음으로 재위 당시에 존호를 받았다. 1457년(세조 3) 1월 16일에 의정부 영의정 鄭麟趾 등이 임금의 계책을

22) 『세조실록』 3권, 2년 4월 18일 정사.

23) 『태종실록』 6권, 3년 10월 27일 신미.

24) 『문종실록』 2권, 즉위년 6월 4일 병자.

25) 『문종실록』 2권, 즉위년 6월 5일 정축.

정해 국가의 難을 평정하여 종묘와 사직을 영원히 편안하게 하고, 비로소 성대한 예절을 맞추어 친히 南郊에 제사하였으니, 功德을 稱述하여 尊號를 올릴 것을 청하였다.<sup>26)</sup> 같은 해 3월 7일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니,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세조와 정희왕후의 존호를 올리고, 뜰에서 하례하였다. 이날 세조는 承天體道烈文英武라는 존호를, 정희왕후는 慈聖이란 존호를 받았다. 존호를 올리는 의식이 끝난 후 세조는 사정전에서, 정희왕후는 강녕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sup>27)</sup>

세조와 정희왕후 이전에도 존호를 받은 왕과 왕비는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사후 또는 태상왕·태상왕비가 되었을 때에 존호를 받았다. 1398년(태조 7) 정종이 즉위하여 부왕인 태조에게 존호를 올려 上王이라 하였고,<sup>28)</sup> 1400년(정종 2) 태상왕에게 啓運神武太上王이라는 존호를 올렸다.<sup>29)</sup> 1400년(정종 2) 12월 1일 태종은 정종을 상왕으로 올리면서 仁文恭睿上王의 존호를, 정안왕후 김씨에게 順德王大妃라는 존호를 올렸다.<sup>30)</sup> 1418년(태종 18) 11월 8일 세종은 태종을 상왕으로 올리면서 태종의 존호를 聖德神功이라 올리고, 원경왕후의 존호를 厚德이라 올렸다.<sup>31)</sup>

이렇게 존호를 받았던 이들은 모두 뒤를 이은 왕이 상왕과 상왕비를 높여 존경의 의미를 표한 것이다. 재위할 당시에 존호를 받은 왕과 왕비는 세조와 정희왕후가 처음이었다. 세조는 자신의 즉위가 명분과 정통성에 하자가 있었던 만큼, 왕권을 강화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세조는 신료들에게 존호를 올리게 했던 것이다. 신료들은 세조에게 충성을 보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존호를 올리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공신들이 세조에게 존호를 올리기를 청하였던 것은 이들의 입장

26) 『세조실록』 6권, 3년 1월 16일 신사.

27) 『세조실록』 7권, 3년 3월 7일 경오.

28) 『태조실록』 15권, 7년 9월 5일 정축.

29) 『정종실록』 5권, 2년 7월 2일 을축.

30) 『정종실록』 6권, 2년 12월 1일 신묘.

31) 『태종실록』 36권, 18년 11월 8일 갑인.

에서도 세조의 즉위는 정당한 것이어야 했던 때문이었다. 세조의 존호를 올림으로써 세조가 국가의 난을 평정하여 종묘와 사직을 평안하게 한 공덕을 나타내었고, 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정희왕후 역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왕비로 재위하는 동안 처음으로 존호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 3. 賀禮와 宴會

세조연간 정희왕후가 왕비로서 참석했던 하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 왕비 책봉과 존호를 올린 의례에서는 대개 하례가 뒤따르기 마련이어서, 왕과 왕비가 각기 하례를 받고 연회를 열었다. 정희왕후가 백관과 내외명부에게 하례를 받았던 경우를 살펴보면, 1458년(세조 4) 윤2월 7일 명으로부터 왕세자를 책봉하는 칙서를 받아 세조와 함께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sup>32)</sup> 같은 해 9월 3일 어머니인 興寧府大夫人의 상례를 마치고 길복으로 갈아입고 하례를 받았고,<sup>33)</sup> 1460년(세조 6) 왕세자빈이 조현례를 행하여 정희왕후가 강녕전에서 명부와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sup>34)</sup> 1461년(세조 7)에 세자가 아들을 낳아 백관의 하례를 받는<sup>35)</sup> 등 정희왕후는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하례를 받았다.

정희왕후의 탄일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세조연간 시행된 정희왕후 탄일연

년도	탄일연 시행여부	탄일연 장소	비고
----	-------------	-----------	----

32) 『세조실록』 11권, 4년 윤2월 7일 을축.

33) 『세조실록』 14권, 4년 9월 3일 정해.

34) 『세조실록』 20권, 6년 4월 19일 을축.

35) 『세조실록』 26권, 7년 12월 1일 정묘.

1455(세조 1)	○	本宮	중궁 탄일하례 정지 세조와 정희왕후 本宮 거동
1456(세조 2)	×		탄일연/하례 기록 없음
1457(세조 3)	×		탄일연/하례 기록 없음
1458(세조 4)	○		백관이 중궁의 탄일을 하례하여 연회를 열어줌
1459(세조 5)	○	강녕전	백관이 정희왕후의 탄일을 하례 세조와 정희왕후가 함께 연회에 참석 연회에서 왕세자가 술을 올리고 종친과 공신의 班首가 술을 올림
1460(세조 6)	○	사정전	백관이 聖節과 중궁의 탄일을 하례 세조와 정희왕후가 함께 연회에 참석 북정한 장수와 군사 위로
1461(세조 7)	×		동지였으므로 백관이 망궐하례를 행하였고 세조가 인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고서 중궁 탄일하례는 정지
1462(세조 8)	○	사정전	종친·재추·승지 입시
1463(세조 9)	○	내전	영의정 신숙주·서원군 한계미·중추원부사 한계희·도승지 노사신 등 입시
1464(세조 10)	△		백관과 命婦가 중궁 탄일 하례
1465(세조 11)	○	강녕전	백관이 중궁의 탄일이므로 하례하고 세조가 연회를 열어줌
1466(세조 12)	○		백관이 중궁의 탄일을 하례 정인지·신숙주·한명회·심회·구치관·최항·윤사분·윤 사훈·한계미·한계희·노사신·임원준·정난종과 승지 등과 중궁의 족친이 侍宴
1467(세조 13)	○	보경당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하례 세조와 정희왕후가 함께 연회 참석 중궁의 족친·정난공신·좌익공신·적개공신· 詳定所堂上·승지 등이 侍宴

세조 재위 14년 동안 정희왕후의 탄일연은 총 9차례 시행되었다. 그 중 세조가 정희왕후와 함께 탄일연에 참석하였던 것은 총 3차례이다. 탄일연에 대한 기록이 없거나 탄일연이 정지되었던 것은 3차례이다. 1456년(세조 2)에 정희왕후의 모친인 흥녕부대부인이 사망하였고, 1457년(세조 3) 9월 2일에는 세자였던 도원군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탄일연을 베풀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1461년(세조 7)에는 정희왕후의 탄일이 동지와 겹쳤기 때문에 탄일 하례가 정지되었다.

1464년(세조 10)에는 백관과 命婦가 중궁의 탄일을 하례하였다<sup>36)</sup>는 기록만 있을 뿐, 연회가 열렸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命婦가 정희왕후의 탄일을 하례하였다는 것을 볼 때, 정희왕후는 자신의 탄일에 내외명부의 하례를 받은 뒤 탄일연을 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 표에 1464년의 탄일연 시행여부가 △라고 되어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1455년(세조 1) 세조는 중궁 탄일하례를 정지하고, 정희왕후의 친정인 本宮으로 거동하여 흥녕부대부인을 뵈었다. 정희왕후도 본궁에 거동하여 흥녕부대부인에게 헌수하였다. 이때 세자빈과 의숙공주, 해양대군이 자리하였고, 여러 女族이 잔치에 陪從하여 모셨다. 세자는 外廳에 있었는데, 여러 男族이 잔치에 배종하여 모셨다.<sup>37)</sup> 단 한번뿐이었으나 왕비가 자신의 탄일에 본궁으로 나가 연회를 베푼 것은 정희왕후가 처음이었다.

실록에서 왕비의 생일에 탄일연을 열어주었음이 확인되는 기사를 살펴보면, 『태조실록』과 『정종실록』에 각각 왕비의 탄일이므로 죄수를 석방하였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나,<sup>38)</sup> 왕비의 탄일연을 열어주었다는 기사는 없다. 『태조실록』에는 원경왕후 민씨의 탄일에 관한 기사가 없으며, 『세종실록』에서 세종이 소헌왕후의 탄일연을 열어주었던 기사 3건을 확인할 수 있다.<sup>39)</sup> 그러나 탄일연에 참석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1441년(세종 23)에 강녕전에서 曲宴을 열어주었다는 것만 확인된다. 『예종실록』에서 백관이 중궁의 탄일을 하례하고 表裏를 바쳤던 기사를 1건 확인할 수 있다.<sup>40)</sup> 예종 이후 즉위한 왕들의 실록에서 왕비의 탄일에 백관으로 하여금

36) 『세조실록』 34권, 10년 11월 11일 경신.

37) 『세조실록』 2권, 1년 11월 11일 임오.

38) 『태조실록』 3권, 2년 6월 14일 무자; 7권, 4년 6월 14일 병자; 『정종실록』 1권, 1년 1월 9일 경진.

39) 『세종실록』 93권, 23년 9월 28일; 97권, 24년 9월 28일 을유; 101권, 25년 9월 28일 기묘.

40) 『예종실록』 4권, 1년 3월 12일 병신.

하례하게 하고 表裏를 바치게 하였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나, 탄일연을 열어주었다는 기사는 없다.

즉 세조는 정희왕후의 탄일연을 열 수 없었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탄일연을 열어주었으며, 그중에서도 3차례나 정희왕후와 함께 연회에 참석하였다. 세조와 정희왕후가 탄일연을 함께 열어주었을 때, 그 연회에 참석한 인물들은 종친과 공신, 외척들이었다. 정희왕후는 세조와 함께 탄일연에 참석하여 이들을 대면하였고, 그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1459년(세조 5)에 정희왕후는 세조와 함께 탄일연에 참석하였다. 이날 연회에서 세조가 신숙주를 영의정으로 임명하고, 李仁孫을 우의정으로 임명하였고,<sup>41)</sup> 정희왕후는 그 자리에서 신료의 인사를 지켜보았다. 정희왕후에게 있어 탄일연은 내외명부와 백관의 하례를 받는 것을 넘어서 신료들의 의례에 까지 참석하는 경험을 제공해준 것이었다.

設宴, 設酌, 進酒 등 크고 작은 술자리와 회례연을 포함하여 세조연간 정희왕후가 참여한 연회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조연간에는 연회가 매우 잦았고,<sup>42)</sup> 정희왕후가 연회를 열어주었거나 세조와 함께 연회를 열었던 것이 『세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37회에 달했다.<sup>43)</sup> 왕과 왕비가 宴을 열어주는 것은 신료(왕비의 입장에서는 내외명부)에게 잔치를 열고 음식을 대접해주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왕과 왕비가 신료들에게 하례를 받는 것이기도 하였다.

세조연간 행해진 연회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정희왕후가 세조와 함께 참석하였던 회례연이다. 『經國大典』에 따르면 회례연은 매년 정월 초하루나

41) 『세조실록』 18권, 5년 11월 11일 기축.

42) 최승희, 앞 논문, 1998, 42~55쪽. 최승희는 세조의 빈번한 연회와 술자리를 酒席政治라 설명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세조는 ①상참(또는 視事)을 받은 후 ②殿·堂·閣·亭 등에 나아가 종친·재상·승지 등을 인견 ③내전에 대신을 불러들여 국사를 논의한 뒤 ④觀射·講武·巡幸시 술자리를 열고 대신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①은 공적인 모임을 마친 후 술자리를 열었던 것이고, ②~④는 사적으로 신료를 불러 술자리를 연 것이었다.

43) 세조연간 정희왕후가 참석하였던 연회는 [부표 1]을 참고하면 된다. 이 부표에는 정희왕후가 세조와 동행하였던 연회이거나 정희왕후가 열었던 연회만을 정리하였다.

동지에 거행하는데 왕세자나 문무백관이 참석하여 예를 행하고, 내전에서 왕비가 거행할 경우 왕세자빈과 내외명부가 참석하여 예를 행한다고 하였다.<sup>44)</sup> 회례연은 왕과 왕비가 다른 공간에서 여는 것이 원칙이었다.

1460년(세조 6) 4월 19일에 세조는 정희왕후와 함께 강녕전에 나아가서 회례연을 행하였다. 이때 內宗親이 侍宴하였으며, 外宗親과 宰樞에게 思政殿月廊에서 잔치를 열어주었다. 이 날은 세자빈의 조현례가 행해진 날로, 회례연을 열기 전에 세조는 근정전에서 정희왕후는 강녕전에서 각각 백관과 내외명부에게서 하례를 받았다. 이날 회례연의 儀式과 陳設 및 行禮節次는 모두 정월과 동지에 회례하는 의식과 같이 하여, 회례연이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도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5)</sup> 『세조실록』에 정희왕후가 매년 정월과 동지에 회례연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없으나, 1465년(세조 11) 12월 30일에 세조가 예조에 “元日 명부의 하례는 사정전에서 행하게 하라”는 전지를 내렸던 것<sup>46)</sup>으로 보아 매년 행하여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록에 왕비가 회례연을 행한 것이 기록된 경우는 『세종실록』에 1건, 『성종실록』에 2건, 『중종실록』에 2건이 있다.<sup>47)</sup> 1476년(성종 7)과 1507년(중종 2), 1517년(중종 12)의 회례연은 왕비 책봉 후 왕비가 내외명부의 하례를 받고 행한 것이다. 1517년(중종 12)에는 “正朝會禮宴은 곧 君臣이 서로 모이는 禮로 폐지된 지 이미 오래”<sup>48)</sup>라고 하였을 만큼 회례연은 이미 드물게 열리고 있었다. 명종연간에는 1559년(명종 14)에 이르러서야 正朝會禮宴을 거행하였고,<sup>49)</sup> 1602년(선조 35)에 왕비를 책봉한 이후 명부를 거느리고 회례연을 행하게 하였으나,<sup>50)</sup> 실제 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선

44) 『經國大典』 『禮典』. “每歲正朝或冬至 行會禮宴 王世子及文武官並赴宴 王妃宴于內殿 王世子嬪及內外命婦並赴”

45) 『세조실록』 20권, 6년 4월 19일 을축.

46) 『세조실록』 37권, 11년 12월 30일 계묘.

47) 『세종실록』 88권, 22년 1월 2일 을사; 『성종실록』 70권, 7년 8월 10일 경진; 75권, 8년 1월 1일 경자; 『중종실록』 3권, 2년 8월 5일 병자; 29권, 12년 8월 16일 기미.

48) 『중종실록』 31권, 12년 윤12월 21일 임진.

49) 『명종실록』 25권, 14년 1월 1일 계유.

조 이후 실록에서 회례연을 행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희 왕후가 세조와 함께 회례연에 참석하였던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4. 豊呈

풍정에 대한 기록은 『태종실록』에 “우리나라 풍속에 試官인 貢擧를 學士라 부르고, 잔치를 여는 것을 豊呈이라 부른다”<sup>51)</sup>고 하여 처음 등장한다. 이후 풍정에 대한 기사가 없다가, 『세종실록』에 “우리나라 풍속에 윗사람에게 술과 음식을 갖추어 올리는 것을 풍정이라고 한다”고 한 기사가 확인된다.<sup>52)</sup>

풍정은 『國朝五禮儀』나 『經國大典』에 규정된 의주가 없으나 『세종실록』에 강무를 마친 뒤의 풍정의주가 있어 그 대략을 예상할 수 있다.<sup>53)</sup> 풍정은 강무 또는 사냥하고 돌아올 때, 능행에서 돌아올 때, 왕이나 왕비의 탄일과 명절 등의 경우에 왕이나 상왕, 왕비 등을 위해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수시로 시행되었다.<sup>54)</sup>

『세조실록』에는 풍정이 행해진 기록이 총 46번이 확인되는데, 그 중 정희 왕후가 참석하였던 것이 25회로 다음과 같다.

[표 2] 세조 재위연간 정희왕후가 참석한 풍정

	일시(재위년-월-일)	올리는 사람	받는 사람	장소	목적
1	03-01-02(정묘)	해양대군	세조/정희왕후	강녕전	

50) 『선조실록』 149권, 35년 4월 29일 경신.

51) 『태종실록』 3권, 2년 2월 18일 신미.

52) 『세종실록』 1권, 즉위년 10월 11일 정해.

53) 『세종실록』 84권, 21년 3월 2일 경술.

54) 지두환, 「朝鮮時代 宴會 儀禮의 변천」, 『한국사상과 문화』 1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169쪽.

2	04-09-08(임진)	충훈부	세조/정희왕후	강녕전	
3	05-05-06(정해)	충훈부	세조/정희왕후	경희루	
4	06-05-05(경진)	왕세자	세조/정희왕후	강녕전	단오, 세자의 大禮
5	06-09-15(무자)	왕세자	세조/정희왕후	춘수당	북방 평정
6	06-11-04(병자)	의정부/육조/충훈부	세조/정희왕후	사정전	大駕 환궁
7	07-02-13(갑신)	영웅대군	세조/정희왕후	교태전	
8	07-02-25(병신)	하성위 정현조	세조/정희왕후	소격전 동원	거동
9	07-09-24(신유)	정희왕후	세조		세조 탄일
10	07-11-11(정미)	종친/외척/충훈부	세조/정희왕후	내전	정희왕후 탄일
11	07-12-03(기사)	의정부/육조	세조/정희왕후	양의전	
12	08-01-01(병신)	왕세자/종친/재추	세조/정희왕후	인정전	
13	08-02-18(계미)	하성위 정현조	세조/정희왕후	충순당	거동
14	08-10-06(정묘)	정희왕후	세조	우이동 앞 언덕	강무 마중
15	09-07-07(갑오)	충훈부/충익사	세조/정희왕후	사정전	
16	09-07-17(갑진)	의정부/육조	세조/정희왕후	강녕전	
17	09-08-15(신축)	정희왕후/세자	세조	미륵동 주정소	헌릉과 영릉 능행
18	09-09-27(계미)	정희왕후	세조		장의사 거동 후 세조 탄일 풍정을 대신
19	09-10-18(계묘)	의정부/육조	세조/정희왕후	사정전	
20	09-12-20(갑진)	종친	세조/정희왕후	비현합	
21	12-07-30(기해)	김수온/영순군	세조/정희왕후	사정전	登俊試
22	13-01-05(임신)	정희왕후	세조	강녕전	
23	13-01-07(갑술)	종친/의정부/육조/충훈부/외척	세조/정희왕후	강녕전	
24	13-11-11(계유)	효령대군/밀성군/덕원군 등	세조/정희왕후	보경당	정희왕후 탄일
25	14-01-05(병인)	정희왕후	세조	비현합	

\* 위 표는 지두환, 「朝鮮時代 宴會 儀禮의 변천」, 『한국사상과 문화』 1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도표 1을 참조하여 수정하였다.

정희왕후가 참석했던 25회의 풍정 중, 정희왕후가 세조에게 풍정을 올린

[進豐呈] 경우는 6회, 세조와 함께 풍정을 받은 경우는 19회였다. 정희왕후가 단독으로 세조에게 풍정을 올린 것은 5회, 세자와 함께 풍정을 올린 것은 1회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조가 풍정을 받을 때 정희왕후와 동행한 횟수가 많다는 점으로, 세조연간 행해진 풍정의 약 45%에 달한다.

이는 세조 이전의 왕들과 비교해도 매우 많은 수치로, 세조 이전에는 풍정이 행해졌던 기록이 매우 적게 나타난다. 태종연간에 풍정에 대한 기록은 1건 등장한다. 세종연간에는 풍정에 대한 기록이 25건이 있고, 그 가운데 왕비가 풍정을 올린 기록이 5건, 왕비가 풍정을 받은 기록이 1건으로 나타난다. 단종연간에는 풍정에 대한 기록이 5건 등장하고, 그 중 왕비가 풍정을 받았던 기록이 1건으로 나타난다.

성종연간에는 풍정보다는 연향을 올린다는 進宴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sup>55)</sup> 풍정은 대개 성종이 세조비 정희왕후와 덕종비 소혜왕후, 예종비 안순왕후 이 세 명의 대비를 위해 올리는 것을 지칭하였다. 중종연간에는 “豐呈은 上殿을 위해 여는 것으로, 이는 모두 1년에 한 번 있는 성대한 일”<sup>56)</sup>이라 하여, 풍정은 왕이 웃어른에게 올리는 성대한 연향을 의미하게 되었다.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풍정을 행하였던 이전과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經國大典』에 따르면, 端午와 秋夕, 行幸과 講武한 뒤 議政府와 六曹에서 進宴하고, 매년 四仲朔에 中勳府에서, 매년 두 번씩 宗親府와 儀賓府에서, 매년 한 번씩 忠翊府에서 進宴한다.<sup>57)</sup> 행행과 강무 하는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내고 무사히 환궁하는 것을 기뻐하고, 종친과 의빈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여 화목을 도모하며, 공신들의 공을 잊지 않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진연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sup>58)</sup>

55)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 고찰 - 進宴을 중심으로」,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6,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2.

56) 『중종실록』 10권, 4년 12월 20일 정미.

57) 『經國大典』 「禮典」 宴享.

세조는 재위연간 여러 차례 사냥을 나갔으며, 순행 및 강무를 시행하였다. 환궁할 때마다 의정부와 육조 및 종친들이 세조에게 풍정을 올렸다. 또한 세조는 자신의 즉위에 공이 있는 공신 및 종친, 외척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했다. 이에 따라 세조연간에는 이전 왕들에 비해 풍정이 빈번하게 행해졌던 것이다. 세조는 정희왕후와 종종 함께 거동하였고, 정희왕후는 세조와 함께 풍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II장에서 세조연간 왕과 왕비를 위하여 행해진 의례들을 살펴보았다. 세조는 반정을 통해 즉위하게 됨으로써 왕위에 명분과 정통성에 하자가 있었고, 이에 따라 명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기 위해 부심하였다. 또한 세조는 조선 왕들 가운데 처음으로 재위기간 중 존호를 받았는데, 이 또한 세조 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조연간 하례연과 탄일연, 회례연 및 풍정이 빈번하게 행해졌고, 정희왕후도 왕비로서 연회를 시행하였다. 또한 세조가 연회에 자주 정희왕후와 동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조가 종친과 공신, 신료들에게 연회를 열어주거나, 이들로부터 연회를 받음으로써 이들과 친분을 쌓고,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해줄 세력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의도로 판단된다.

---

58) 김종수, 앞 논문, 2002, 160~162쪽.

### Ⅲ. 왕비의 정치적 판단들

조선왕조의 기본법전이라 일컬어지는 『經國大典』에는 왕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 없다. 왕은 대내적으로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로, 그의 위상과 권한을 문자로 표현하여 법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존재였다.<sup>59)</sup> 왕의 배우자인 왕비 또한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왕비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에 따라서 정치참여의 양상도 달라졌다. 일반적으로 왕비는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는데, 대개 비공식적으로는 왕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였다. 공식적인 정치 참여는 수렴청정으로 대표되나 이는 왕비가 아닌 대비로서 정치를 한다는 차이가 있다. Ⅲ장에서는 『세조실록』을 통해 정희왕후가 당시 정치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세조실록』에 정희왕후가 왕비로서 신료들과 대면하여 직접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정희왕후가 비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세조실록』의 기사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희왕후 자신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였던 경우, 둘째, 세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희왕후의 발언이 언급되는 경우, 셋째, 정희왕후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하여 언문으로 세조에게 아뢰는 경우이다.

첫째로 정희왕후 자신이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였던 경우를 살펴보면, 그녀의 발언이 『세조실록』에 기록된 기사로는 2건이 있다. 이 2건의 기사는 정희왕후의 족친과 문종의 적녀인 경혜공주에 대한 것으로, 왕실의 인물들과 관련되어있다. 그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A. 戶曹參判 尹士昕이 마음대로 議政府典吏를 가두니, 의정부에서

59) 오종록, 「조선시대의 왕」, 『역사비평』 54, 역사문제연구소, 2001.

아뢰었다. 임금과 중궁이 크게 성내었는데, 중궁이 말하였다. “윤사혼은 나의 경계를 듣지 아니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임금이 명하여 윤사혼을 파직하고, 사헌부로 하여금 그를 국문하게 하였다. 姜孟卿·權擘이 파직하지 말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外戚은 하늘을 우리러보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하고 윤허하지 않았다.<sup>60)</sup>

B. 중궁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寧陽尉公主를 박대하여 버리는 것은 안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바로 나의 마음이다.” 곧 영의정 鄭昌孫·좌의정 申叔舟·우의정 權擘을 승문당에 불러 의논하여 말하였다. “鄭惊의 妻는 文宗의 嫡女이며, 또한 죄가 없으니 내가 家舍와 田民의 公廩을 주고자 한다.” (하략)<sup>61)</sup>

A는 윤사혼의 파직과 관련된 기사이다. 윤사혼은 정희왕후의 동생으로, 1455년(세조 1) 12월 27일 正郎으로서 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sup>62)</sup> 그는 세조가 즉위하자 정희왕후의 아우로서 갑자기 軍器監正으로 승진되었고, 이후 좋은 벼슬을 고루 거쳐 직위가 1품에 이르렀다.<sup>63)</sup> 윤사혼은 이전에도 세조에게 “文才도 아니고, 武略도 아니고, 老人도 아니면서 1년 안에 승지에서 호조참판이 되었는데, 지금 이조참판으로 승진되었으니, 복이 극도에 달하면 재앙이 발생하게 되므로 마땅히 이를 경계하여야 한다.”거나 “나이가 어린

60) 『세조실록』 21권, 6년 8월 6일 기유.

61) 『세조실록』 26권, 7년 12월 14일 경진.

62) 『세조실록』 2권, 1년 12월 27일 무진.

63) 『성종실록』 179권, 16년 5월 13일 임술. 윤사혼의 줄기에 따르면, 그는 1455년(세조 1) 세조가 즉위하자 정희왕후의 아우로서 갑자기 軍器監正으로 승진되었다. 1459년(세조 5)에 通政大夫 刑曹參議에 승진되고, 조금 뒤에 承政院同副承旨로 옮겼으며, 조금 뒤에 嘉善大夫에 승진되어 호조·이조의 參判과 仁順府尹·漢城府尹을 거쳐 崇政大夫의 품계에 승진되었다. 1465년(세조 11)에 工曹判書에 승진되고, 1466년(세조 12)에 中樞府知事로 옮겼으며, 조금 뒤에 判書에 승진되고, 1468년(세조 14)에 崇祿大夫의 품계에 승진되었다. 1469년(예종 원년)에 輔國崇祿大夫에 加資되었다가 조금 후 大匡을 더하였는데 모두 都摠管을 겸임하였다. 1471년(성종 2)에 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의 號를 받았고, 領敦寧府事 坡川府院君에 승진되었다. 1475년(성종 6)에 議政府右議政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부원군에 봉해졌다. 이때에 이르러 사망하였는데, 나이는 64세였다.

데 작질이 높으니 마땅히 부귀가 차고 넘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sup>64)</sup>

세조가 윤사훈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면서도 그를 파격적으로 계속하여 승진시켰던 까닭은 그가 정희왕후의 동생이기 때문이었다. 윤사훈 뿐만 아니라 정희왕후의 다른 형제들도 파격적으로 승진하였던 것은 마찬가지였다.<sup>65)</sup> 정희왕후의 외가가 되는李文和의 후손들 또한 세조가 즉위하고 난 뒤 대거 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정희왕후의 지친이라는 이유로 매우 높은 관직에 올랐다.<sup>66)</sup> 외척의 발호를 염려하여 자신의 비인 원경왕후 민씨의 가문과, 아들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 심씨의 가문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태종과 비교하여 보면, 세조가 외척을 우대하였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왕의 입장에서 외척은 왕권과의 경쟁관계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자신과 가장 가까운 혈족관계에 있는 존재였으므로 이들은 일찍부터 중용되기 마련이었다.<sup>67)</sup>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던 세조는 외척을 자신의 세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중용하였다. 세조연간 외척들이 정치의 주축이 된 상황에서 정희왕후는 이들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A의 기사를 보면, 윤사훈의 잘못에 대해 정희왕후가 “나의 경계를 듣지 아니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화를 내며 말하였다. 정희왕후는 윤사훈

---

64) 『세조실록』 17권, 5년 8월 26일 을해; 19권, 6년 1월 28일 병오.

65) 정희왕후의 큰오빠인 윤사훈은 1436년(세조 18) 25세에 음서로 관직에 나아갔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정6품 호조좌랑, 정5품 형조정랑을 역임하였다. 1455년(세조 1) 11월 10일 정3품 첨지중추원사의 관직을 제수 받아 파격적으로 승진하였고, 같은 해 12월 27일 원종1등공신에 녹훈되었다. 이후 계속 승진되어 정1품 영돈녕부사까지 이르렀다. 정희왕후의 둘째 오빠인 윤사윤은 1436년(세조 18)에 친시문과에 급제하여 정4품 사헌부 장령으로 임명되었다. 1453년(단종 1) 정난2등공신에, 1455년(세조 1) 좌익3등공신에 녹훈되었다. 윤사윤은 1453년 5월 7일 공로도 없이 승진하였다는 탄핵을 받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승진하였고, 1461년(세조 7) 사망할 때에 벼슬이 정2품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66) 정희왕후의 외할아버지인 이문화의 3남인 이효례는 원종2등공신에, 4남 이효지는 원종1등공신에, 5남 이효신과 6남 이효상은 원종3등공신에, 이효례의 아들 이배륜과 이효신의 아들 이계동은 각각 원종3등공신에 녹훈되었다. 이효상의 줄기에 별다른 재능이 없었으나 정희왕후의 외삼촌인 까닭에 관위가 정2품에 이르렀다고 한다.

67) 김태영, 앞 논문, 1994, 138쪽.

의 관직 승차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동생인 윤사흔의 성격을 잘 알았고, 그의 처신이 문제가 될 여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B는 문종의 적녀인 경혜공주의 처분에 관한 기사이다. 경혜공주의 남편인 寧陽尉 鄭悰은 1455년(단종 3) 윤6월 11일 금성대군이 세조에 의해 숙청되면서 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1461년(세조 7) 7월 26일 정종이 승려와 함께 모반을 꾀하였다하여 국문을 당하였고<sup>68)</sup>, 약 3개월 후인 10월 20일 凌遲의 형을 받아 죽었다.<sup>69)</sup> 같은 달 23일 세조는 환관을 보내어 경혜공주를 한성으로 데리고 오게 하고, 다음달 11월 4일 정종의 죽음을 연좌하지 않도록 하였다.<sup>70)</sup> 경혜공주가 막 한성으로 올라왔을 때, 정희왕후가 세조에게 경혜공주를 박대하여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에 세조는 경혜공주에게 집과 토지를 내려주었다.

그렇다면 정희왕후는 왜 경혜공주를 박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을까? 경혜공주는 문종의 유일한 적녀였으므로, 반정을 통해 즉위하여 왕위에 정당성이 없었던 세조로서는 경혜공주를 박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세조는 경혜공주가 정종을 따라 유배지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sup>71)</sup> 정희왕후가 경혜공주에게 집과 토지를 내려주게끔 세조에게 요청하였던 것을 보면, 경혜공주가 정종을 따라 유배지에 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도 정희왕후의 영향이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세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희왕후의 발언이 언급되는 경우를

68) 『세조실록』 25권, 7년 7월 26일 갑자.

69) 『세조실록』 26권, 7년 10월 20일 병술.

70) 『세조실록』 26권, 7년 10월 23일 기축; 26권, 7년 11월 4일 경자.

71) 정종은 처음 영월로 유배되었는데, 경혜공주가 병에 들었다고 하여 유배지가 경기도 양근으로 바뀌었고, 상왕 단종의 요청으로 한성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두달 뒤 경혜공주의 병이 나았으므로 수원으로 다시 유배되었는데 이때 경혜공주가 정종과 함께 갔다. 삼사에서 정종의 처벌이 약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세조는 정종의 유배지를 통진으로 옮겼다.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이 벌어지자 세조는 정종의 유배지를 전라도 광주로 옮겼고, 경혜공주 또한 정종을 따라 광주로 갔다.

살펴보면, 세조가 신하들을 인견하여 자신과 정희왕후와의 대화를 언급하는 기사 5건이 확인된다. 5건의 기사 중 정치적인 발언을 한 기사가 4건, 세자의 교육에 관한 기사가 1건으로 나타난다.

C. 承政院에 전교하였다. “中宮이 歲畫로 四民圖를 殿壁에 붙이고자 하기에 내가 이를 말렸더니, 중궁이 말하였다. ‘먹는 것이 여기서 나오 고 입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니, 붙여 두고 보는 것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붙였는데, 내 생각에도 그렇다고 여겨진다.” 承旨 등이 아뢰었다. “農桑은 王政의 근본인데, 國母께서 유의하시니 실로 백성의 복입니다.” 임금이 기뻐하여 술을 내려 주었다.<sup>72)</sup>

D. 임금이 平山府 南山에 올라 친히 五衛를 거느리고 여러 衛獎의 得失을 보았다. 申叔舟가 술을 올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인하여 中樞·宰樞와 더불어 술자리를 베풀고, 承旨 洪應에게 명하였다. “中宮이 어 제 나에게 말하길, ‘지금 巡幸이 이미 끝났으니, 마땅히 慶事를 거행하 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므로, 내가 그 말을 아름답게 여긴다. 지나온 여러 읍의 守衛와 侍衛한 장수와 군사에게는 각각 1품계를 더하여 주고, 순행 때문에 得罪한 趙之周 같은 자도 아울러 모두 용서하되, 역시 한 품계를 더하여 주어라.”<sup>73)</sup>

E. 吏曹에 傳旨하기를, “尹氏의 族親으로 아직 서용되지 못한 자를 이제 모두 錄用하도록 하라.”하였다. 곧 都承旨 盧思愼을 불러서 이르기, “내가 中宮의 족친으로 서용되지 못한 자를 다 쓰고자 하였는데, 중궁이 내게 말하기를, ‘官爵은 마땅히 어진 사람을 선택하여 除授하여 야 하는 것입니다. 尹氏家の子弟는 하나가 아닌데 어찌 賢否를 가리지 않고서 다 쓰겠습니까? 또 李氏·沈氏의 족친으로서 아직 서용되지

72) 『세조실록』 3권, 2년 1월 2일 임신.

73) 『세조실록』 22권, 6년 10월 30일 임신.

못한 자도 오히려 많은데, 홀로 尹氏의 족친만 쓰겠습니까? 마음에 실로 미안합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매우 옳은 것이므로 나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대는 具致寬 등과 더불어 李氏·沈氏·尹氏의 족친 중에 가히 쓸 만한 자를 널리 의논하여서 아뢰어라.”하였다.<sup>74)</sup>

F. 임금이 金國光·尹弼商에게 말했다. “중궁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 시대의 反逆은 나라의 禍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군졸을 다시 훈련하는 것도 또한 나라를 튼튼히 하는 방도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그 마음에 感動하였으니, 경 등도 그리 알라.”<sup>75)</sup>

G. 임금이 「訓辭」 10章과 「序文」을 지어 세자에게 내려 주었다. (중략) 마침내 御書를 同副承旨 李克堪에게 내려 주며 말했다. “오늘 이른 아침에 中宮이 나에게 讒訴의 두려움을 論하다가 ‘세자가 반드시 이 뜻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곧 마음속으로 感動하고, 世事와 人才는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옛날의 賢君도 訓戒를 지어서 자손에게 남겨 주었으니, 내가 비록 아는 것은 없으나 아버지의 도리는 있으므로, 마음속에 품은 바를 서술하여 세자에게 그 大略을 주는 것일 뿐이다. 경은 처음부터 세자를 가르치는 직임을 받았으니, 마땅히 이 뜻을 알고 여러 師傅들과 더불어 訓辭를 자세히 기록해 두고, 이 教條를 우선 가르쳐서 하루 속히 깨우치게 하여 중신토록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으로 삼게 하라.”<sup>76)</sup>

C와 관련하여 『국조보감』과 『임하필기』가 주목된다. “중궁이 歲畫 대신 四民圖를 殿壁에 붙이고자 하였다”고 하여 세화와 사민도를 구분하고 있다.<sup>77)</sup> 세화는 새해를 맞이해서 재앙을 막기 위하여 그리는 그림이고, 사민도

74) 『세조실록』 32권, 10년 2월 4일 정해.

75) 『세조실록』 43권, 13년 8월 27일 경신.

76) 『세조실록』 14권, 4년 10월 8일 임술.

77) 『국조보감』 10권, 세조조; 이유원, 『임하필기』 10권, 典謨編. “中宮欲以四民圖 代歲畫 貼殿

는 사농공상으로 구분되는 백성들의 일을 그린 그림이다. 정희왕후가 세화를 대신하여 사민도를 붙이고자 하였든 사민도를 세화로 삼아 붙이고자 하였든, 정희왕후는 왕비로서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잊지 않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정희왕후가 왕비가 되기 이전에 잠저에서 생활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았던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D는 1460년(세조 6)에 시행된 평안도와 황해도의 순행과 관련한 기사이다. 세조는 10월 4일 정희왕후와 함께 약 1달 동안 순행한 뒤 11월 4일 환궁하였다.<sup>78)</sup> 이때 정희왕후는 왕비가 된 이후 처음으로 순행을 나가게 되었는데, 세조와 함께 술자리를 열고 신료들과 함께 어울렸다.<sup>79)</sup> 또한 세조는 정희왕후와 함께 사냥터에 나가거나, 武擧의 射侯를 친시하였다.<sup>80)</sup> 이 순행에서 주목할 것은 세조가 정희왕후와 함께 양로연을 열었다는 것인데,<sup>81)</sup> 자세한 내용은 IV장에서 후술하겠다. 정희왕후는 이 순행을 통해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순행하는 한 달여 동안 신료들과 대면할 수 있었다. 순행하는 과정에서 정희왕후는 자신들을 시위한 장수와 군사들이 수고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순행이 끝날 즈음에 세조에게 경사를 거행할 것을 말하였던 것이다. 세조는 정희왕후의 말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

E는 세조의 관료 임명에 관한 기사이다. 앞서 주지했듯 세조는 정희왕후의 친족들을 공신으로 임명하였고, 고위 관직에 임명하였다. 명분과 정통성에 흠이 있는 세조로서는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해줄만한 세력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정희왕후의 외척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정희왕후의 족친들은 세

---

벽”

78) 『세조실록』 22권, 6년 10월 4일 병오; 22권, 6년 11월 4일 병자,

79) 『세조실록』 22권, 6년 10월 5일 정미; 6년 10월 30일 임신.

80) 『세조실록』 22권, 6년 10월 13일 을묘; 6년 10월 16일 무오.

81) 『세조실록』 22권, 6년 10월 18일 경신.

조가 즉위한 이후 뚜렷한 고위관직진출 양상을 보이는데, 세조는 그 외에 족친을 자신의 세력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정희왕후는 세조의 의도를 파악하고, 종친인 李氏들과 세종비 소헌왕후의 외척인 沈氏를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는 이시애의 난과 관련된 기사이다. 1467년(세조 13) 이시애는 함길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이시애는 한명회와 신숙주, 노사신과 한계희 등도 난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세조는 이를 사실로 믿은 것은 아니었으나 신숙주를 옥에 가두고 한명회를 가택에 연금시켰다. 세조로서는 신숙주와 한명회가 비록 반역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권력이 비대해져 이러한 난언이 있는 것이라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세조는 이들을 가둔지 16일 만에 석방시키고 입궐하게 하여 이들에 대한 자신의 총애가 그대로임을 보여주었다.<sup>82)</sup>

세조는 귀성군 이준, 남이와 같은 왕실의 종친세력을 앞세워 이시애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권력이 비대해진 훈구 세력을 대신할 새로운 세력으로 종친을 주목하였던 것이다. 반란을 진압하고 난 후 세조는 적개공신을 녹훈하였는데, 한명회나 신숙주와 같은 훈구세력은 녹훈되지 못했다.<sup>83)</sup> 세조는 종친이나 자신과 연결된 왕실 관련 인사들의 정치적 권한을 강화시켜, 권신화한 훈구세력과 대립하게 하였다. 이들을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이시애의 반란으로 내적으로 피해가 많았던 입장에서, 정희왕후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혜를 세조에게 말하였던 것이다.

G는 세조가 세자(훗날 예종)에게 『훈사』 10장과 「서문」을 세자에게 내려준 기사이다. 그 「서문」에는 “오늘 아침에 너의 어머니가 나에게 세상일을 이야기하였는데, 참소의 두려움에 이르러 말하기를, ‘참소하는 사람은 반드시殃

82) 『세조실록』 42권, 13년 6월 6일 기해.

83) 『세조실록』 43권, 13년 9월 20일 임오.

禍를 받아야 합니다.’하였다. 내가 ‘옳은 말씀이오. 다만 참소를 당한 사람을 용서할 뿐이오. 공자의 뜻도 이에 불과하오.’라 하였다. 너의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세자도) 이 뜻을 알아야 합니다.’라 하였다.”<sup>84)</sup>고 하여 『훈사』를 지어 세자에게 내린 이유를 밝혔다.

세조는 세자의 교육을 특히 중시하여 여러 차례 세자의 교육에 대하여 신료들에게 명을 내리거나, 세자에게 직접 가르침을 전한 바 있다.<sup>85)</sup> 그러나 E기사의 가르침은 정희왕후의 말로 인해서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희왕후가 세조와 정치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으며, 정희왕후 자신도 세자의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5건의 기사를 종합하여보면 정희왕후는 세조와 정치에 대하여 대화를 많이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화는 백성, 관료의 인사임명, 당시의 정치사상 등 모든 주제에 걸쳐있었다. 또한 세조는 정희왕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정희왕후가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세조에게 언문으로써 아뢰었던 경우는 『세조실록』에서 1건의 기사만이 확인된다. 이는 洪允成의 간통사건과 관련되어있다. 1458년(세조 4) 7월 11일 홍윤성은 어머니의 상중에 故護軍 金汗의 딸을 간통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세조는 홍윤성을 추국할 것을 명하였으나 바로 다음날 홍윤성의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갔을 뿐’이라는 말을 듣고는 불문에 부치며, 도리어 의금부에 김한의 아들 金汾을 국문하라고 傳旨하였다.<sup>86)</sup> 또한 홍윤성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한 持平 權以經을 파직하였다.<sup>87)</sup>

84) 『세조실록』 14권, 4년 10월 8일 입술.

85) 『세조실록』 24권, 7년 5월 29일 무진; 29권, 8년 11월 20일 경술; 8년 12월 4일 갑자; 31권, 9년 10월 11일 병신; 9년 12월 14일 무술; 32권, 10년 3월 27일 경진; 38권, 12년 1월 21일 갑자; 33권, 10년 4월 22일 갑진; 38권, 12년 1월 21일 갑자; 41권, 13년 1월 29일 병신; 44권, 13년 11월 30일 임진.

86) 『세조실록』 13권, 4년 7월 11일 병신; 13권, 4년 7월 13일 무술.

다음달 8월 24일 左承旨 尹子雲이 김분·김인의 옥사에 대해 아뢰자 세조는 김분 등이 공신인 홍윤성을 무고하여 모함한 죄가 가볍지 않으므로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전지하기를, “元勳大臣은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니, 무릇 백성들이 마땅히 그를 국가와 일체로 보아야 한다. 만약 김분 등의 말한 바대로 한다면 功臣은 어떻게 보전하겠으며, 국가를 어떻게 유지하겠는가?”라 하였다.

이에 정희왕후가 언문으로 “근래에 사람들 가운데 死罪에 연좌된 자가 많았는데, 김분 등이 범한 죄도 진실로 같은 류에 해당한다면, 성상께서 모를 지기 極刑에 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청컨대 먼 곳으로 유배하여 살 길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아뢰었다. 세조는 즉시 정희왕후의 글을 승정원에 내리고, 특별히 사형을 감하게 하였다.<sup>88)</sup>

신숙주는 홍윤성의 사건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묻는 세조에게 “홍윤성은 실로 옳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하였다. 세조 본인도 “권이경을 파직하지 않았다면 홍윤성은 온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고 하였다.<sup>89)</sup> 세조는 홍윤성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처사가 무리임을 알고 있었으나, 반정으로 등극하여 취약한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공신을 처벌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국가와 일체인 원훈대신’을 모함한 사건으로 처리하여, 그 대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세조에게 있어서 국가는 바로 왕권이었고, 원훈은 왕권과 일체관계에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sup>90)</sup>

그러나 정희왕후가 간접적으로 세조에게 김분 등의 살 길을 요청함으로써, 홍윤성의 간통사건도 김분 등을 귀양을 보내는 선에서 처리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정희왕후가 세조 연간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으며, 왕비로서 세조를 보좌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7) 『세조실록』 13권, 4년 7월 26일 신해.

88) 『세조실록』 13권, 4년 8월 24일 기묘.

89) 『세조실록』 13권, 4년 8월 24일 기묘.

90) 김태영, 앞 논문, 1994, 128쪽.

#### IV. 세조의 정치와 정희왕후

『세조실록』에는 정희왕후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인다. 그러나 그 기사들의 대부분이 정희왕후 단독의 기사가 아니라 세조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왜 세조는 정희왕후와 함께 하였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본 장에서는 세조의 정치 방식이 정희왕후가 다른 왕비들보다 실록에 많이 나타나게 하였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1452년(단종 즉위년) 10월 김종서 등을 제거하려했던 거사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세조의 측근들이 걱정하며 세조를 만류하였다. 세조는 말리는 자들을 뿌리치고 활을 들고 일어나 나섰는데, 정희왕후가 중문에서 기다리다가 세조에게 손수 갑옷을 입혀주었다.<sup>91)</sup> 이러한 고사는 고려 태조 왕건의 비 신혜왕후 유씨가 왕건에게 직접 갑옷을 입혀주었던 고사나,<sup>92)</sup>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잡을 때 원경왕후 민씨가 몰래 감추어두었던 병장기를 내어주었던 고사와<sup>93)</sup> 비슷한 서사를 보인다.

1467년(세조 13)에 세조가 정희왕후와 함께 강녕전에 나아가서 세자의 생신연을 열었을 때, 세조가 참석한 신료들에게 “지금 중궁은 어질고 덕이 있으니, 唐의 長孫皇后와 우리나라의 神懿王后와 비할 만하다”고 하였다.<sup>94)</sup> 세조는 정희왕후를 당 태종의 妃인 長孫皇后와 조선 태조의 妃 神懿王后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당 태종과 조선의 태조에 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조실록』 총서에 따르면, 1451년(문종 1) 8월에 세조 잠저의 가마솔이 스스로 소리 내어 울었는데, 비파라고 하는 무당이 급히 찾아와 정희왕후를 알현하길 청하고는 “대군이 39세에 등극할 징조”라고 말하였다. 정희왕후가

91) 『단종실록』 8권, 1년 10월 10일 기사.

92) 『고려사』 권1, 세가1.

93) 『태조실록』 14권, 7년 8월 26일 기사.

94) 『세조실록』 41권, 13년 1월 3일 경오.

놀라 이에 대하여 물으려하자 무당은 말하지 않고 가버렸다.<sup>95)</sup> 문종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희왕후가 대군이 39세에 즉위한다는 말을 하는 무당을 꾸짖거나 쫓아내지 않고 더 물으려고 했다는 것은 성리학적 명분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이는 정희왕후가 세조의 즉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II장에서 세조연간에 設宴, 設酌, 進酒 등 크고 작은 술자리와 연회가 많이 행해졌음을 언급하였다. 세조는 즉위 이후 종친, 공신, 재추들과 함께하는 연회와 술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이들 세력과 친화하고 단합하여 자신의 세력으로 확보하고자 했다.<sup>96)</sup> 그 밖에도 세조는 신료들을 내전으로 불러들여 정사를 보거나, 신료들을 인견하여 경연을 실시하였다. 이때 정희왕후는 종종 세조와 함께 자리하여 신료들을 대면하였는데, 다만 이 당시 정희왕후가 어떠한 행동과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세조가 신료를 인견하여 정사를 본 경우는 매우 많아 모두 열거하기가 힘들다. 그 중에서 정희왕후가 함께 자리하였던 2가지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1461년(세조 7) 9월 26일 세조는 한명회가 변방의 방비에 대해 馳啓하기 위해 보낸 從事官 金壽寧을 교태전에서 인견하고는 곧 그에게 좋은 음식을 내려주고 술을 올리게 하였다. 이어 세조는 정희왕후에게 “이 사람이 바로 한명회의 종사관으로, 내가 일찍이 북변의 일을 근심하여 마음을 놓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오니 내가 안심이다”고 말하였다.<sup>97)</sup> 1463년(세조 9) 11월 2일에 세조가 정희왕후와 평원대군의 집으로 이어하였다. 동부승지 윤필상을 불러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시키고 술을 중궁에게 올리게 하였다.<sup>98)</sup>

---

95) 『세조실록』 1권, 총서.

96) 최승희, 앞 논문, 1998, 50쪽.

97) 『세조실록』 25권, 7년 9월 26일 계해.

98) 『세조실록』 31권, 9년 11월 2일 병진. 세조가 윤필상을 인견하였다는 기록은 『연려실기술』이나 『해동야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 기록들에서는 윤필상이 형방승지로 입직하고 있을 때 세조가 침전 처마 끝에 윤필상을 인견하였다가 침전 안으로 들이고 술을 내려주

세조는 國政이 곧 家政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近臣들로 하여금 정희왕후를 국모로 받들고 친근하게 알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sup>99)</sup> 따라서 정희왕후는 세조와 함께 신료들을 인견하였고, 연회에 참석하여 신료들을 대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조가 신료를 인견하였던 것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兀狄哈이 토물을 바치고자 온 자리에 정희왕후와 함께 하였다는 것이다.<sup>100)</sup> 대외적으로 조선은 명의 제후국이었으나, 조선은 여진을 비롯한 이민족들을 조선의 지배질서 아래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세조는 여진인의 내조를 적극 권장하고 우대하였다. 이는 국방을 안정시키고자 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진인들까지 자신의 덕에 감화되어 조선에 내조하는 것이라 신료들에게 과시하고자 했던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세조는 자신이 천명을 받은 왕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sup>101)</sup>

세조가 여진인들을 우대하는 정책 중 하나로 여진인들을 인견하고 술을 내려주거나 射侯하게 하고, 사냥에 참가하게 했다. 세조는 여진을 인견하는 자리에 정희왕후와 동행하기도 하였다. 1458년(세조 4) 8월 19일 세조가 살곳이 들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하였는데, 야인 李古納哈과 李阿具 등이 어가를 수종하였다. 어가가 樂天亭에 이르러 세조가 술자리를 열어주었다. 환궁 후에는 정희왕후와 함께 사정전에서 어가를 수종한 이들에게 술자리를 열어주었다.<sup>102)</sup> 1460년(세조 6) 6월 10일 세조는 정희왕후와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서 兀狄哈 澄乃 등을 인견하고, 종친과 채추 및 야인들에게 명령하여 사후하게 하였다.<sup>103)</sup> 세조는 정희왕후와 동행함으로써 조선에 내조한 여진

---

었다. 그때 침전 안에는 정희왕후가 세조와 함께 있었다고 하였다. 『세조실록』과 이 기록들은 세조가 윤필상을 인견한 장소의 차이를 보일 뿐, 윤필상을 인견하였을 때 정희왕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같다.

99) 김태영, 앞 논문, 1994.

100) 『세조실록』 21권, 6년 9월 24일 정유.

101) 박정민,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02) 『세조실록』 13권, 4년 8월 19일 갑술.

103) 『세조실록』 20권 6년 6월 10일 을묘.

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조는 재위기간동안 講武, 巡幸, 陵幸, 觀稼 등과 같은 공적인 행차를 자주 시행하였다. 강무는 매년 봄과 가을의 농한기에 국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일정 지역에 행차하여 사냥하는 제도로, 태조연간부터 시작되어 태종, 세종, 세조연간에 활발하게 시행되었던 군사훈련방식이었다. 강무를 통해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 지휘체계를 점검하며, 지방 수령들의 근무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민심을 살필 수 있었다.<sup>104)</sup>

세조연간에는 강무의 횟수가 줄었고, 강무 일수 또한 2-5일로 크게 축소되었다. 세조는 재위기간동안 9차례 강무를 시행하였는데,<sup>105)</sup> 정희왕후는 1463년(세조 9), 1464년(세조 10), 1468년(세조 14) 세 차례 강무에 동행하였다. 태종은 재위 18년 동안 23회의 강무를 시행하였으나 왕비가 동행한 적은 없었다. 세종은 재위 31년 동안 30회의 강무를 시행하였는데 왕비가 동행한 것은 1번이었다. 그러나 이때 왕비가 동행하였던 강무는 온행을 겸하여 갔었던 것이었으므로, 세조연간 정희왕후가 세 차례나 강무에 동행하였던 것과 차이가 있다.

세조는 강무를 왕이 사냥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세조연간에는 강무에서 목적으로 하는 군사훈련과 사냥의 기능이 분화되는 경향

104) 이현수, 「조선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군사』 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05) 세조연간 강무 시행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는 이현수, 위 논문, 2002, 246쪽을 참조하여 수정하였다.

년도	기간	일수	장소	비고
1456년(세조 2)	9.28 - 10.12	15	강원도 평강, 철원	齊陵의 제사 兼行
1461년(세조 7)	2.29 - 3.3	5	경기 포천	
	10.10 - 10.12	3	경기 풍양	세자 동행
1462년(세조 8)	9.27 - 10.6	10	강원도 평강, 철원	
	11.4 - 11.5	2	경기 풍양	
1463년(세조 9)	2.18 - 2.19	2	경기 청계산	
	10.3 - 10.7	5	경기 풍양	정희왕후 동행
1464년(세조 10)	10.2 - 10.4	3	경기 풍양, 아차산	정희왕후, 세자 동행
1468년(세조 14)	1.27 - 3.12	44	충청도 온양	정희왕후, 세자 동행. 溫幸

이 보이며, 군사훈련을 위해서는 大閱을 통한 진법훈련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sup>106)</sup> 세조는 觀射, 觀火砲(또는 觀放砲, 觀砲火), 觀習陣, 觀水戰 등을 통해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하루일정의 사냥인 打圍를 시행하였다. 세조는 觀稼 또한 자주 시행하였는데, 관가 시 대부분 水戰, 放火砲, 射藝 등의 관람을 병행하였다.<sup>107)</sup> 정희왕후는 세조와 동행하여 사냥을 비롯한 군사훈련들을 수차례 관람하였는데,<sup>108)</sup>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군사적인 대략을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세조는 재위 중 총 네 차례의 순행을 실시하였는데, 모두 정희왕후와 동행하였다. 1460년(세조 6)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한 달 간 평안도와 황해도를 순행하였으며, 1464년(세조 10) 2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충청도 온양을 순행하였고, 1465년(세조 11) 8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충청도를 순행하고, 1466년(세조 12) 3월 16일부터 윤3월 24일까지 약 38일간 강원도를 순행하였다. 1464년(세조 10)과 1465년(세조 11), 1466년(세조 12)의 순행은 온행을 겸하였다.

1465년(세조 11)의 순행을 제외한 세 차례 순행의 공통점은 세조가 일정 중에 모두 사찰을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1460년(세조 6)에는 衍慶寺와 王輪寺 두 사찰에, 1464년에는 俗離寺와 福泉寺 두 사찰을 방문하였다. 1466년(세조 12)의 강원도 순행에서는 약 16일 동안 고성 온정 행궁에 머물렀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장안사·정양사·표훈사·유점사·낙산사·상원사를 방문하였다.<sup>109)</sup>

106) 이현수, 앞 논문, 2002.

107) 이상균, 「朝鮮前期 國王의 出遊性 行次와 이에 대한 官僚들의 認識」, 『전북사학』 40, 전북사학회, 2012.

108) 『세조실록』 16권, 5년 4월 22일 계유; 17권, 5년 9월 24일 계묘; 18권, 5년 10월 10일 무오; 5년 12월 27일 을해; 20권, 6년 6월 6일 신해; 6년 6월 10일 을묘; 23권, 7년 1월 16일 정사; 27권, 8년 2월 27일 임진; 33권, 10년 7월 22일 계유; 33권, 10년 7월 22일 계유; 34권, 10년 8월 20일 신축; 34권, 10년 9월 30일 경진; 34권, 10년 12월 29일 무신; 36권, 11년 8월 2일 정축; 40권, 12년 12월 30일 정묘; 42권, 13년 4월 19일 갑인; 42권, 13년 5월 1일 을축; 42권, 13년 5월 18일 임오; 44권, 13년 11월 22일 갑신.

109) 이상균, 위 논문, 2012.

강원도 순행과 관련해서, 김수온의 「상원사중창기」가 주목된다. 1464년(세조 10) 4월 세조가 신병으로 고생하자 정희왕후가 慧覺尊者 信眉와 大禪師 學悅 등에게 자문을 구하고 상원사의 중창을 명하였다. 이후 세조의 건강이 회복되자 세조와 종친, 재상들이 상원사 중창에 후원하였고, 상원사는 1466년에 완공되었다. 이때 세조는 순행을 핑계삼아 강원도에 행차하여 정희왕후와 세자, 신료들을 거느리고 상원사의 낙성연에 참석하였다.<sup>110)</sup> 상원사의 중창을 명령한 것이 정희왕후였고, 정희왕후가 승려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로 독실하게 불교를 믿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왕의 행차는 왕이 궁궐 속에서만 존재하는 최고지배자가 아니라 현존하는 정치적 최고 지배의 상징으로서 왕의 권위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다.<sup>111)</sup> 또한 왕과 왕비는 순행 길에 耆老, 유생, 기생 등에게서 은덕을 칭송하는 가요를 받았다. 세조와 정희왕후 역시 순행과 강무를 행하고 도성에 돌아오면서 가요를 받는 의례를 행하였다. 세조는 순행과 강무 등 행행을 통해 군사훈련과 백성들의 생활상을 살펴보고자 했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세조는 정희왕후와 동행하여 정희왕후도 자신과 같이 신료와 백성들에게서 존경을 받게 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은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거행되었던 행행이었다.<sup>112)</sup> 세조는 순행을 하면서 은행을 겸하기도 하였는데, 『세조실록』에 정희왕후가 홀로 온천에 갔을 가능성이 있는 기사가 확인된다. 1460년(세조 6) 4월 22일 忠勳府堂上 황수신과 원효원이 5월에 공신의 仲朔宴을 행하도록 요청하니, “지금은 中宮이 [溫井에서] 목욕하고 있으니,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전지하여 거절하였다.<sup>113)</sup> 『세조실록』에는 정희왕후가

110) 김수온, 『拭疣集』 卷2, 記類 「上元寺重創記」.

111) 정재훈, 「조선시대 국왕의례에 대한 연구 - 강무(講武)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5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112) 이왕무, 「조선 전기 국왕의 溫幸 연구」, 『경기사학』 9, 경기사학회, 2005.

온정에 행차했다는 것이나 그 행차에 대한 준비에 대한 기록, 심지어 정희 왕후가 어느 온정으로 가서 목욕을 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다만 세조의 전지로 정희왕후가 당시 궁궐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정희왕후가 다른 왕비들보다 실록에 등장하는 횟수가 많은 편이지만, 정희 왕후의 기록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사회질서를 통합하기 위해 기로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기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양로연에 주목하고자 한다. 양로연은 국가에서 敬老와 풍속교화를 위해 설행하는 연회였다.<sup>114)</sup> 『經國大典』에 매년 가을 양로연을 설행하며, 대소원인 중 80세 이상인 자가 참석하고, 부인이면 왕비가 내전에서 거행하고, 외방 수령은 내·외청으로 나누어 설행하였다.<sup>115)</sup> 1432년(세종 14) 정월 7일에 양로연의가 마련되고,<sup>116)</sup> 정월 16일에는 州府郡縣의 양로연의가,<sup>117)</sup> 같은 해 8월에 왕비양로연의주가 마련되었다.<sup>118)</sup> 이 양로연의에 기초하여 같은 해 윤8월 3일에 세종은 처음으로 근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풀었고,<sup>119)</sup> 3일 뒤 세종비 소헌왕후가 사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풀었다.<sup>120)</sup> 이후 양로연은 흉년이나 災變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정례적으로 설행되었다.

양로연은 임금이 주최하는 외연과 왕비가 주최하는 내연으로 나누어져 남녀가 구분되어 설행되었다. 보통 외연이 열린 며칠 뒤에 내연이 열렸으나, 한 해에 항상 모두 열린 것은 아니었고 상황에 따라 외연 또는 내연만 열리기도 했다. 외연과 내연은 참여자가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제외하면 의식의

113) 『세조실록』 20권, 6년 4월 22일 무진.

114) 정현정, 「15~16세기 朝鮮時代 養老宴의 설행양상과 의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15) 『經國大典』 「禮典」 宴享.

116) 『세종실록』 55권, 14년 1월 7일 정묘.

117) 『세종실록』 55권, 14년 1월 16일 병자.

118) 『세종실록』 57권, 14년 8월 21일 정미.

119) 『세종실록』 61권, 15년 윤8월 3일 계축.

120) 『세종실록』 61권, 15년 윤8월 6일 병진.

절차나 위치, 내용에 있어 동일했다.<sup>121)</sup>

세조 재위동안 세조와 정희왕후가 양로연을 실행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3] 세조 재위연간 양로연 실행양상

년도	세조		정희왕후	
	일시	장소	일시	장소
1456(세조 2)	10월 1일	대명전	-	-
	10월 17일	근정전	-	-
1458(세조 4)	9월 15일	경회루	9월 18일	사정전
1459(세조 5)	9월 11일	인정전	9월 19일	사정전
1460(세조 6)*	10월 18일	평양 대동관	10월 18일	평양 대동관
1461(세조 7)	9월 15일	근정전	9월 18일	사정전
1462(세조 8)	9월 11일	근정전	9월 15일	사정전
1463(세조 9)	9월 8일	사정전	9월 11일	사정전
1464(세조 10)	9월 3일	근정전	9월 7일	사정전
1465(세조 11)	8월 10일	근정전	8월 12일	사정전(?) <sup>122)</sup>
1466(세조 12)	9월 10일	근정전	9월 13일	사정전

1460(세조 6)\*은 양로연이 함께 열린 것을 의미한다.

세조 재위 14년 동안 양로연은 총 11회 실행되었다. 1455년(세조 1)에는 세조가 즉위한 해로 양로연 실행에 대한 논의와 실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456년(세조 2)에는 세조는 10월 1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양로연을 실행하였으나, 정희왕후가 양로연을 실행한 기록이 없다. 이는 정희왕후 어머니인 흥녕부대부인의 상례 때문으로 짐작된다. 1457년(세조 3) 9월에 세자인 도원군이 사망하였으므로 양로연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67년(세조 13)에는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 양로연이 실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조 재위기간동안 양로연은 거의 매년 정례적으로 열렸다고 할 수 있다.

121) 정현정, 앞 논문, 2008.

122) 1465년(세조 11) 8월 12일에 정희왕후가 베푼 양로연에 대해서는 “中宮이 婦人養老宴을 행하였다”고만 기록되어 장소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양로연이 처음 실행되었던 세종 연간부터 중궁양로연은 사정전에서 매년 행해졌으므로 이때도 사정전에서 실행하였으리라 추측된다.

세조 재위기간동안 설행되었던 양로연에서 주목할 것은 1460년(세조 6)에 양로연이 합동으로 설행된 것이다. 양로연은 임금이 주최하는 외연과 중궁이 주최하는 내연으로 나누어 설행되었는데, 세조는 이 해에 황해도와 평안도를 순행하면서 합동으로 양로연을 설행하였다. 이때의 양로연은 한양이 아닌 평양의 대동관에서 설행되었다.

1460년에 설행된 양로연은 조선시대의 실록에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합동으로 설행된 양로연이다. 양로연의, 중궁양로연의와 같이 합동으로 열리는 양로연에 대하여서는 따로 기록된 의주가 없으며, 『세조실록』에서 간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내연과 외연의 의식의 절차와 내용은 같은데, 이때의 양로연에서는 왕과 왕비가 입장하는 순서만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세조는 양로연을 중요시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설행하였을까? 그 까닭은 국왕과 왕비가 나라의 아버지, 나라의 어머니에 해당되는 존재로서 한편으로는 노인들에게 잔치를 열어주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존경을 받기 위한 때문이었다. 성리학 이념을 국가 이념으로 했던 조선은 養老를 통해 孝를 강조하였다. 세조에게 있어서 양로연을 여는 것은 효의 연장선상 속에서 결국 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조는 양로연을 매년 정례적으로 열어 백성들의 존경과 충성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세조가 정희왕후와 함께 의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려 말 왕실 연회 전통의 연장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예는 고려 忠烈王이다. 충렬왕은 자신의 妃인 齊國大長公主와 함께 사냥을 하러 나가거나 절을 방문하는 등 행사에 참여하였다.<sup>123)</sup> 『태조실록』 총서에 단오절에 격구할 때에 부녀들도 또한 길 왼쪽과 오른쪽에 장막을 매고 錦段으로 장식하고 구경하였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sup>124)</sup> 즉 고려 말 왕실과 귀족들의 연회 양상이 복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123) 『고려사』 권89, 열전 2, 后妃.

124) 『태조실록』 1권, 총서.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여 즉위하였기 때문에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자신의 권위를 만회하는 수단으로 불교에 의지하였다. 세조는 이전 왕보다 불교에 우호적이었으며, 정희왕후 역시 불교를 믿었다. 세조는 불교적 상서를 적극 이용하였는데, 상서와 恩典을 통해 세조는 부처와 거의 동일한, 초월적인 존재로 나타남과 동시에 자비로운 왕의 모습을 나타냈다.<sup>125)</sup>

앞서 언급하였듯 상원사가 정희왕후의 명에 의해 중창되었다는 것과 비슷하게 정희왕후가 불사를 드렸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拭疣集』의 「大明朝鮮國大圓覺寺碑銘」에 따르면, 1464년(세조 10) 여름 4월 경술일에 효령대군이 법회를 열어 圓覺經을 강하였는데, 여래가 공중에 나타나고, 감로가 널리 젖어 사리가 800여 개로 분신하였다. 5월 갑인에 효령대군이 靈跡을 갖추고 사리를 받들어 아뢰었다. 세조가 정희왕후와 舍元殿에서 頂禮를 행하자, 사리가 또 400여 개로 분신하였다.<sup>126)</sup> 이때의 상서와 관련하여서 『세조실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록의 기사에서는 세조와 정희왕후가 함원전에서 불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舍元殿에 사리를 공양하였다는 것으로 기록되어있다.<sup>127)</sup>

세조는 정희왕후와 장의사에 거동하여 승려들에게 법회를 열게 하고, 넷가로 이어하여 백성들에게 술을 내려주었다.<sup>128)</sup> 1457년(세조 3)에 세조는 1448년(세종 30)에 철폐되었던 정업원을 복설하였다. 이는 세조연간 일어난 반란사건들로 인해 역적으로 연좌되었던 다수의 왕실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sup>129)</sup> 이후 세조는 정희왕후와 정업원에 거동하여 1448년(세종 30)에 淨業院이 철폐되었을 때 司贍寺에 이속되었던 노비 1백구를 다시 돌려주었다. 또 세조가 정희왕후와 함께 정업원에 행

125) 박세연, 「조선초기 세조대 불교적 상서의 정치적 의미」, 『사충』 74, 2011.

126) 김수운, 『拭疣集』 補遺, 「大明朝鮮國大圓覺寺碑銘」

127) 『세조실록』 33권, 10년 5월 2일 갑인.

128) 『세조실록』 19권, 6년 3월 20일 정유.

129) 탁효정, 「조선 전기 정업원(淨業院)의 성격과 역대 주지」, 『여성과 역사』 22, 한국여성사학회, 2015.

차하였을 때 사리분신하자 사면령을 내렸다.<sup>130)</sup>

『세조실록』에 정희왕후가 불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旨를 내렸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H. 임금이 병환이 난 지 며칠이 되었다. 밤 5고에 韓繼禧·任元濬·金尙珍을 불러 궐내에 들어와서 약 시중을 들게 하였다. 날이 썰 무렵에 장차 忠順堂에 이어하려고 후원의 문 밖에 이르러 임금이 龜城君 李浚의 어깨에 기대어 충순당에 이르렀다. 병환이 더욱 심하여 김상진 등이 약을 올렸다. 임금이 都承旨 申漉을 재촉하여 불러서 말씀이 있을 듯했으나, 마침내 명령이 없었으니, 대개 병환이 위급하여 뒷일을 부탁하려고 한 때문이었다. 한계희 등이 중궁의 명령[旨]을 받들어 孔雀祈禱齋를 內佛堂에서 베푸는데, 金守濫과 姜希孟을 行香使로 삼았다. 이 때 중궁이 한계희 등에게 명하여 숨기고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계희가 盧思愼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홀로 중궁의 명령을 받고서 首相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혹시 흉서(薨逝)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큰 일에 어찌하겠는가?”하고, 마침내 약간 그러한 뜻을 보였다. 이에 高靈君 申叔舟·上黨君 韓明澮·영의정 具致寬·좌의정 黃守身·좌찬성 崔恒 등이 빈청에 모여서 內旨를 받들어 여러 신하들을 나누어 보내어서 宗廟·社稷과 境內의 名山·大川과 佛宇에 기도하게 하였다. 해가 저물자 신면이 궐내에 들어가서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강도 이외의 죄는 방면하게 하였다.<sup>131)</sup>

孔雀祈禱齋는 孔雀齋라고도 하는데, 孔雀明王을 本尊으로 하여 재앙을 없애고 병마를 덜어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법회이다. 세조 이전에는 공작재가 세종연간과 문종연간에 각각 1회씩 행해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130) 『세조실록』 20권, 6년 6월 15일 경신; 30권, 9년 6월 18일 병자.

131) 『세조실록』 권39, 12년 9월 28일 병신

있다.<sup>132)</sup> 문종연간에 행해진 공작재는 세조가 문종이 편찮았기 때문에 흥천사에서 시행하였던 것으로, 이때 공작재는 3일 동안 진행되었다.<sup>133)</sup> 1457년(세조 3) 7월 28일에는 세자의 병 때문에 승려 21인을 경회루 아래에 모아 孔雀齋를 열고, 議政府 堂上·六曹判書 이상과 승지에게 명하여 齋所에 들어가 祈禱하게 하였다.<sup>134)</sup>

정희왕후는 세조의 병세가 심상치 않자 한계희 등으로 하여금 내불당에서 공작기도재를 시행하게 하였다. 이는 문종연간 세조가 공작재를 시행하였던 것과 1457년(세조 3)에 공작재를 시행하였던 선례를 바탕으로 旨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하고 있었고, 국왕의 건강은 나라의 안위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정희왕후는 세조의 병환과 불사를 행한 것을 비밀에 부치고자 旨를 내렸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정희왕후는 세조의 존재를 바탕으로 신료들에게서 존중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56년(세조 2) 5월 27일 세조가 상참을 받은 후 사정전에서 술자리를 열고 정희왕후와 함께 蠶臺를 잡고 한명회에게 술을 따라주었다.<sup>135)</sup> 1459년(세조 5) 1월 29일 세조가 신숙주를 함길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신숙주가 하직하였다. 세조는 신숙주에게 술자리를 열어주고 위로하여 보내며 내전에 들어가 중궁에게 拜辭하게 하였다.<sup>136)</sup> 한명회와 신숙주는 세조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공신이였다. 그런 공신에게 정희왕후와 함께 술을 내리거나, 내전에 들어가 배사하게 하였던 것은 정희왕후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초월적 존재로서 대우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세조는 자신의 초월적인 왕권을 부각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교에 의지

132) 『세종실록』 127권, 32년 1월 22일 무술; 『문종실록』 13권, 2년 5월 6일 무술.

133) 『문종실록』 13권, 2년 5월 6일 무술.

134) 『세조실록』 8권, 3년 7월 28일 기축.

135) 『세조실록』 4권, 2년 5월 27일 을미.

136) 『세조실록』 15권, 5년 1월 29일 임자.

하였고, 정희왕후에게도 왕의 배우자로서 초월적인 권위를 부여하고자 했다.

## V. 결론

본고에서는 세조연간 정희왕후가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에 집중하여, 『세조실록』을 중심으로 세조의 정치와 정희왕후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왕과 왕비를 위한 의례들을 살펴보았고, 『세조실록』에 드러난 정희왕후의 정치적 판단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세조의 정치가 정희왕후가 『세조실록』에 많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세조연간 왕과 왕비를 위해 행해진 중요한 의례로 冊封儀와 上尊號儀, 하례연과 탄일연, 회례연과 풍정 같은 연회들을 주목하여, 당시 의례들이 많이 행해졌음을 확인하였다. 정희왕후는 세조가 즉위하여 왕비로 책봉되었으며,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관복과 고명을 받았다. 또한 세조와 함께 재위하는 동안 존호를 받음으로써 세조의 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세조연간 하례연과 탄일연, 회례연 및 풍정이 빈번하게 행해졌고, 정희왕후도 왕비로서 연회를 시행하였다. 또한 세조와 함께 연회에 참석하여 공신 및 신료들과 대면하여 친분을 쌓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세조실록』에서 정희왕후가 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다는 기사는 확인할 수 없으나, 비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정희왕후의 비공식적인 정치참여는 정희왕후 자신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였던 경우와 세조를 통해 정희왕후의 발언이 언급되는 경우, 정희왕후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언문으로 세조에게 글을 올렸던 경우로 드러난다. 정희왕후는 당시 정치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렸고, 이를 세조와 함께 의논하였다. 세조는 정희왕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그녀가 정치에 대한 상당한 안목을 갖고 있었고, 세조를 도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조의 정치방식이 정희왕후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를 만들어주었음을 밝혔다. 『세조실록』에 나타나는 정희왕후에 대한 기사는 대부분이 세조와 함께 기록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조는 정희왕후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신료들을 인견하여 정사에 대한 의논을 나누거나 경연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조는 여진인들을 인견하고, 여러 군사적인 행행에도 정희왕후와 동행하여 관람하였다. 또한 정희왕후는 세조와 함께 순행에 참여하여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았고, 기로정책의 일환으로 양로연을 열어 주었다. 세조는 행차를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고자 했고, 정희왕후와 동행하여 정희왕후도 백성들에게서 존경을 받게 하고자 했다. 또한 세조와 정희왕후는 매년 정례적으로 양로연을 설행함으로써 백성들의 존경과 충성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세조는 적극적으로 불교를 옹호하였는데, 정희왕후 또한 세조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조는 반정으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정당성이 부족하였으며, 그의 권위는 매우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이에 따라 세조는 불교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정희왕후에게도 왕의 배우자로서 권위를 부여하고자 했다.

『세조실록』은 예종이 즉위한 뒤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연간에 완성되었다. 『세조실록』의 편찬자는 세조의 즉위에 영향을 끼쳤던 공신들, 즉 한명회와 신숙주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이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사초를 취사선택한 결과 정희왕후가 세조와 함께하였던 기록들을 실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록의 편찬자들은 정희왕후가 세조의 권위에 힘입어 수렴청정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왕비로 재위하는 동안 세조와 함께하였던 경험이 많았음을 보이려고 했다. 그럼으로써 성종의 즉위와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I. 사료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高麗史』, 『國朝寶鑑』, 『燃藜室記述』, 『海東野言』,  
『林下筆記』, 『拭疣集』

### II. 연구저서

- 김수지, 『대비, 왕 위의 여자』, 인문서원, 2014.
- 변원림, 『조선의 왕후』, 일지사, 2006.
- 신명호, 『조선왕비실록』, 역사의 아침 2007.
- 신명호 등 7인,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돌베개, 2012.
- 유승환,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비열전』, 글로북스, 2010.
- 윤정란, 『왕비로 보는 조선왕조』, 이가출판사, 2015.
- 임중용, 『조선왕비열전』, 선영사, 2015.
- 정두희, 『朝鮮初期政治支配勢力研究』, 일조각, 1983.
- 지두환, 『세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8.
- 최배용, 『朝鮮朝 世祖의 國政運營』, 신서원, 2000.
- 최승희, 『조선초기 정치사연구』, 지식산업사, 2002.
- 최홍기 외,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아카넷, 2006.

### Ⅲ. 연구논문

- 강제훈, 「朝鮮 世祖代의 朝會와 王權」, 『사총』 61, 역사학연구회, 2005.
- 권연웅, 「世祖代의 佛敎政策」, 『진단학보』 75, 진단학회, 1993.
- 김경수, 「세조의 집권과 권력 변동」, 『백산학보』 99, 백산학회, 2014.
- 김 돈, 「세조대 단종복위운동과 왕위승계문제」, 『역사교육』 98, 역사교육연구회, 2006.
- 김 범, 「朝鮮 成宗代의 王權과 政局運營」, 『사총』 61,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5.
- 김순남, 「조선 세조대 체찰사 한명회에 대하여」, 『한국사학보』 23, 고려사학회, 2006.
- \_\_\_\_\_, 「조선 세조대 말엽의 정치적 추이」, 『역사와 실학』 60, 역사실학회, 2016.
- 김우기, 「朝鮮 成宗代 貞熹王后의 垂簾聽政」, 『조선사연구』 10, 조선사연구회, 2001.
- 김중수, 「조선시대 궁중연향의 변천」, 『동방학』 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0.
- \_\_\_\_\_, 『조선시대 궁중연향 고찰 - 進宴을 중심으로』,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6,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2
- 김태영, 「朝鮮초기 世祖王權의 專制性에 대한 一考察」, 『한국사연구』 87, 1994.
- 박세연, 「조선초기 세조대 불교적 상서의 정치적 의미」, 『사총』 74, 2011.
- 박정민,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송혜진, 「조선조 진풍정에 대한 연구」, 『국악원논문집』 2, 국립국악원, 1990.

- 오종록, 「조선시대의 왕」, 『역사비평』 54, 역사문제연구소, 2001.
- 오종록, 「世祖의 즉위과정과 정치문화의 변동」, 『인문과학연구』 31,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 이상균, 「朝鮮前期 國王의 出遊性 行次와 이에 대한 官僚들의 認識」, 『전북사학』 40, 전북사학회, 2012.
- 이왕무, 「조선 전기 국왕의 溫幸 연구」, 『경기사학』 9, 경기사학회, 2005.
- 李英淑, 「朝鮮初期 內命婦에 대하여」, 『역사학보』 96, 역사학회, 1982.
- 이현수, 「조선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군사』 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임혜련, 「19세기 垂簾聽政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정두희, 「조선 세조-성종조의 공신연구」, 『진단학보』 51, 진단학회, 1981.
- 정재훈, 「조선시대 국왕의례에 대한 연구 - 강무(講武)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5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 정현정, 「15~16세기 朝鮮時代 養老宴의 施行양상과 의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지두환, 「朝鮮時代 宴會 儀禮의 변천」, 『한국사상과 문화』 1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 최승희, 「세조대 왕위의 취약성과 왕권강화책」, 『조선시대사학보』 1, 조선시대사학회, 1997.
- \_\_\_\_\_, 「세조대 국정운영체제」, 『조선시대사학보』 5, 조선시대사학회, 1998.
- \_\_\_\_\_, 「成宗朝의 國政運營體制와 王權」, 『한국사연구』 10, 조선사연구회, 2001.
- 탁효정, 「조선 전기 정업원(淨業院)의 성격과 역대 주지」, 『여성과 역사』 22, 한국여성사학회, 2015.

한영우, 「왕권의 확립과 제도의 완성(세조~성종)」,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73.

한춘순, 「성종 초기 貞熹王后(세조비)의 政治 聽斷과 勳戚政治」, 『조선시대사학보』 22, 조선시대사학회, 2002.

한충희, 「왕권의 재확립과 제도의 완성」, 『신편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홍근혜, 「조선 성종대 貞熹王后 國喪 의례와 그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80, 조선시대사학회, 2017.

홍성익, 「조선전기 王妃 加封胎室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117, 한국사학회, 2015.

# ABSTRACT

## Political Activities of Queen Junghee(貞熹王后) in Sejo Era

PARK SU JIN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Queen Jeonghee(貞熹王后) is a very important person in studying the early history of Joseon Dynasty. This study examined how Queen Jeonghee acted as a queen in the era of Sejo. The study intended to reveal that various ceremonies Queen Jeonghee participated in or a series of acts she carried out with Sejo were closely related to how Sejo did politics and that she acted with a political sense.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banquets such as Chaeckbongui(冊封儀), Sangjonhoui(上尊號儀), Harye(賀禮), Tanilyeon(誕日宴), Hoeraeyeon(會禮宴) and Pungjeong(豐呈) among ceremonies conducted for the king and the queen in the era of Sejo. Queen Jeonghee was selected as a queen after Sejo ascended the throne, and as Sejo received a eulogistic posthumous title of a king during his reign for the first time among kings of Joseon, she also received such title. In the era of Sejo, Haryeyeon(賀禮宴), Tanilyeon, Hoerayeon and Pungjeong etc. often took place and Queen Jeonghee also held such banquets as queen. Sejo often appeared at such banquets together with Queen Jeonghee.

This study found how Queen Jeonghee saw the then political situations through 『The Annals of King Sejo』. Queen Jeonghee's unofficial political particip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cases in which she directly made political remarks, cases in which her political remarks were indirectly mentioned through Sejo, cases in which she told to Sejo about political incidents in Hangeul(한글). It appears that Queen Jeonghee made a judgement on political situations and Sejo respected and accepted it.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she had an eye for politics and tried to actively engage in politics assisting Sejo.

Sejo often participated in banquets and granted an audience to court officials with Queen Jeonghee. And he also participated in official visits with Queen Jeonghee such as Gangmu(講武), Sunhaeng(巡幸), Neunghaeng(陵幸) and Gwanga(觀稼). Sejo wanted to raise his authority among the people through such visits and also to make Queen Jeonghee receive respect from the people by going with her. Sejo actively advocated Buddhism and Queen Jeonghee believed in Buddhism as well. As Sejo ascended the throne by removing his nephew from the throne, he lacked legitimacy in his throne and his authority was severely damaged in the course. Therefore, he tried to secure his transcendental authority in Buddhism and to grant a transcendental authority to Queen Jeonghee as a spouse of a king as well.

## 부 표

[부표] 정희왕후가 참석한 연회

	일시(계위년-월-일)	주최	참석자	장소	비고
1	02-05-27(을미)	세조/ 정희왕후	임영대군, 의창군, 익현군, 밀성군, 영순군, 한명회 등	사정전	상참 후 設酌
2	03-01-17(임오)	정희왕후	공신의 어머니	내전	設宴 홍윤성, 윤암, 박거검, 심 결, 김처의, 권람, 권반, 한 종손, 유사, 조득립, 홍순 로, 설계조, 한서귀, 권경을 불러 사정전 월랑에서 음 식 대접
3	03-03-07(경오)	정희왕후	공신의 어머니와 아내	강녕전	정희왕후에게 존호를 올린 뒤 공신의 어머니와 아내가 정희왕후를 모시고 宴에 참석
4	04-06-15(신미)	세조/ 정희왕후	왕세자, 종친, 의정부, 육조참판 이상과 親功臣의 당상관 이상, 승지 등	강녕전	設宴
5	04-08-19(갑술)	세조/ 정희왕후	종친, 재추, 野人, 선전관, 겸사복 등	사정전	매사냥 후 환궁하여 進酒 야인 이고납합과 이아구 등이 술을 올림
6	04-09-07(신묘)	세조/ 정희왕후	종친, 재추	사정전	設宴 정희왕후는 수렴 후 참석 종친 擊棒, 대학생 역학계몽 講함.
7	04-11-08(임진)	세조/ 정희왕후	왕세자, 종친, 의정부, 육조 참판이상, 승지, 친공신 등	사정전	동지망궐례 이후 設宴
8	04-11-17(신축)	세조/ 정희왕후	왕세자, 친공신, 五功臣의 적장자, 육조참판 이상, 종친, 승지	춘순당	功臣仲月宴
9	05-01-16(기해)	세조/ 정희왕후		강녕전	음복연
10	05-05-15(병신)	세조/ 정희왕후	임영대군, 왕세자,	경회루	設宴

		정희왕후	내종친, 심희, 심결, 윤사분, 윤사운, 윤사흔 등		임영대군 상좌의 고발을 위로하기 위한 연회
11	05-08-01(경술)	세조/ 정희왕후	하동부원군 정인지	내전	設酌 재추 인견, 종친 경서 강독
12	05-12-30(무인)	세조/ 정희왕후		강녕전	設宴
13	06-03-14(신묘)	세조/ 정희왕후	한명회, 강순, 윤자운	춘수당	進酒
14	06-04-19(을축)	세조/ 정희왕후	내종친	강녕전	왕세자 혼례 회례연
15	06-07-17(신묘)	세조/ 정희왕후	내종친, 신숙주, 이운손, 판연성, 민발, 이정규, 매우, 이흥덕, 김유례, 홍일동, 정창손, 한명회, 홍운성, 윤사분, 윤사운, 윤사흔, 집직한 도진무와 승지 등	경회루	設宴
16	06-윤11-11(계축)	세조/ 정희왕후	종친, 재추, 승지 등	충순당	設宴 왕세자 병 쾌차
17	06-10-05(정미)	세조/ 정희왕후	여러 장수, 승지 등	파주	강무 중 設酌
18	07-02-09(경진)	세조/ 정희왕후		충순당	음복연 겸 功臣仲月宴
19	08-03-12(정미)	충훈부	세조/정희왕후	사정전	仲月宴
20	08-12-10(경오)	세조/ 정희왕후	왕세자, 종친, 재추	세자궁	세자궁 落成宴
21	09-04-11(경오)	세조/ 정희왕후	왕세자, 내종친, 친공신, 심희, 윤사분, 성봉조, 이석형, 민발, 승지 등	사정전	設宴
22	09-06-15(계유)	세조/ 정희왕후	종친, 재추	세자궁 동쪽 언덕	設宴
23	11-01-03(신해)	세조/ 정희왕후	왕세자, 효령대군, 임영대군, 영웅대군, 덕원군, 영순군 귀성군, 정현조, 이철,	강녕전	세자 생신연

			정인지, 정창손, 신숙주, 한명회, 윤사분, 성봉조, 최항, 홍원용, 김국광, 승지 등		
24	11-02-13(경인)	세조/ 정희왕후	왕세자, 한명회, 구치관, 황수신, 박원형, 최항, 원효연, 윤자운, 임원준, 송문립, 한종손, 김수령, 이윤인, 승지 등	화위당	문과·무과 방방 設酌
25	11-10-17(신묘)	세조/ 정희왕후	효령대군, 임영대군, 영등대군, 여러 공신	잠저의 구궁	宴 공신에게 잔치를 열어줌
26	11-12-07(경진)	세조/ 정희왕후	왕세자, 영웅대군, 한명회, 구치관, 홍달손	효령대군 집 東大廳	宴 효령대군과 처에게 잔치를 내려줌
27	12-01-03(병오)	세조/ 정희왕후	효령대군, 임영대군, 영웅대군, 밀성군, 李定, 이부, 귀성군, 정현조, 이호, 이철, 신숙주, 구치관, 황수신, 심희, 심결, 윤사분, 박원형, 성봉조, 윤사훈, 최항 한계희, 김국광, 노사신, 양성지, 한계미, 鄭軾, 권개, 조득립, 승지 등, 승의전부사 王循禮	강녕전	세자의 생신연
28	12-01-19(임술)	세조/ 정희왕후	영웅대군	영웅대군 집	設酌
29	13-01-03(경오)	세조/ 정희왕후	내종친, 홍윤성, 김국광 한계희, 노사신, 임원준, 성입, 승지 등, 승의전부사 왕순례	강녕전	세자의 생신연
30	13-09-21(계미)	세조/ 정희왕후	왕세자, 효령대군, 임영대군, 귀성군,	선정전	設宴 북정한 군사 위로

			정인지, 정창손,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 심희, 최항, 홍윤성, 홍달손, 심결, 김국광, 윤자운, 어효침, 구종직, 정자영, 양성지, 승지 등		
31	13-11-04(병인)	정희왕후	六功臣의 命婦	선정전	設宴
32	13-12-12(갑진)	세조/ 정희왕후	효령대군과 부인, 세자, 정인지, 신숙주, 구치관, 최항, 홍달손, 윤사분, 성봉조, 윤사훈, 임원준, 윤자운, 노사신, 柳洙, 양성지, 홍응, 성임, 구종직, 서거정, 김예몽, 이과, 윤흙, 이효상, 승지 등	선정전	設慰宴 효령대군과 부인 위로
33	14-01-03(갑진)	세조/ 정희왕후	종친 등	강녕전	세자의 생신연
34	14-01-25(병술)	세조/ 정희왕후	임영대군, 밀성군, 영순군, 정의공주 등, 구치관, 박원형	사정전 뜰	置酒 임영대군 알현
35	14-03-21(신사)	세조/ 정희왕후		임영대군 집	設酌 임영대군 집 거등
36	14-05-05(갑자)	세조/ 정희왕후	세자, 효령대군 등 여러 종친, 정창손,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심희, 최항, 홍윤성, 조석문, 윤사훈 등	모화관	設酌 射侯
37	14-05-20(기묘)	세조/ 정희왕후	세자, 정창손, 신숙주, 한명회, 최항, 홍윤성, 조석문, 강순, 홍달손, 심희 등		設酌 射侯